

... 머리말 ...

우리나라의 농림축수산물 수출규모는 2009년도 기준 48억 달러로 농림수산 식품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공사의 해외시장개척 사업 추진 등에 힘입어 매년 수출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등 상위 5개 기존 주력 수출시장이 전체 농림축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4%로 수출시장이 매우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사는 시장확대 여지가 큰 이머징마켓 개척을 통한 새로운 수출활로 모색이 긴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 주력 수출시장 이외의 이머징마켓 시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식품시장 정보 인프라가 미흡한 이들 이머징 마켓에 대한 정보 조사·제공을 통해 수출선 다변화와 신규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여 수출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4개국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뉴질랜드 식품시장에 대한 조사결과로 금번 조사에서는 해외 전문조사기관(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등)의 전문성 있고 신뢰도 높은 식품 시장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한국식품 유통실태 및 수출확대 방안 등은 해외모니터 등을 활용하여 현장감 있는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자료집이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한국 농식품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 11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이사 윤인택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뉴질랜드(이머징 마켓) 정보 조사 제공을 통해 수출선 다변화와 신규시장 진출 기회 제공,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국내 수출업체 수출전략 도출

❑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기간 : '10. 10월~11월
- 조사방법 : 해외전문조사기관(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의 시장 정보 뉴질랜드 해외모니터, KOTRA 사이트(국가정보) 등

❑ 조사내용

- 일반개황
- 농업현황
 - 농업 생산동향, 주요품목 산업전망
- 식품산업 현황
 - 시장특성, 유통구조
- 농식품 수출입현황
 - 대 세계 수출입동향, 한-뉴 교역 규모, 한국과의 수출입현황
- 수출입 통관제도
 - 수입식품관련 제도, 수출입관련 제도, FTA 체결 및 추진현황
- 한국식품 유통 및 수출유망 품목
 - 주요 수입/유통 품목, 유통실태, 경쟁력
- 한국식품 수출확대 및 진출방안
 - SWOT분석, 시장진출 애로사항 및 문제점, 시장 진입을 위한 제안
- 기타
 - 주요기관 연락처, 잠재적 구매자 목록, 식품관련 전시회

틈새시장 조사결과 (요약)

뉴질랜드

■ 식품산업 규모

- 전체 식료품 소매판매액 NZ\$ 246억('08년 추정)

■ 시장 특성

- 최근 아시안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중식, 일식, 태국식 등 아시안 식당이 보편화 되었으며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아시안 식품이 많이 늘어남
- 생활방식 변화로 편의식품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
 - 패스트푸드, 에스닉푸드는 2002년 이후 88% 증가하였고 인스턴트식품 25%, 과자류 17%, 식사 대체품 17%, 냉장 가공 식품 16% 증가함
 - 인구당 소비량이 제일 큰 제품은 유제품이고, 슈퍼마켓,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에서는 포장된 혼합샐러드와 야채가 판매되며, 수산물 소비도 높음
- 인구 중 약 25% 정도가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gluten-free 제품의 수요가 증가('07년 NZ\$ 22백만 → '11년 50백만)

■ 식품 수입 현황

- '08년 기준 식품 수입규모는 17.3억 달러임
 - 수입국으로 호주 47%, 미국 10.2%, 중국 4.3%를 차지함
 - 다국적 식품 기업의 경우는 호주를 생산 근거지로 하여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함

- 중국 '06년 48백만달러 → '08년 75백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수입품목으로는 과일주스, 과자류, 견과류, 식품원재료, 제빵관련 원재료임

■ 유통구조

- 두 개(Foodstuffs (NZ) Limited와 Progressive Enterprises Limited)의 슈퍼마켓 체인점이 거의 전체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판매 규모는 '08년 NZ\$ 127억(US\$89억), 식품 판매의 절반 이상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
 - 두 개의 소매유통점의 판매독점으로 가격 경쟁력('00년 이후 42.5%인상)이 활발하지 않고 유통라인이 비교적 단순한 형태
- 수입되는 식품의 유통은 주로 현지 에이전트나 유통회사를 통하는 경우가 80% 이상
- 아시아 이민자 증가로 최근에는 아시안 식품 유통점의 성장이 두드러짐
 - 한국 교민사회에서는 Wang, 한양쇼핑, 김스클럽, 에스마트 등이 있음

■ 한국식품 경쟁력 및 문제점

- 한국에서 직접 수입하여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의 현지 수입 업체가 수입하여 뉴질랜드에 유통을 하고 있으며 마케팅이나 홍보가 부족한 실정임
- 한국의 식품 제품 개발력과 상품화 능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고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어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뉴질랜드는 식품류의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아 시장 진출이나 확대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음

■ 한국식품 수출확대 가능품목

- 전자레인지로 이용하여 간단히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즉석식품류
 - 냉동제품, 용기면, 레토르트 제품 등
- 스낵, 파이, 껌 등
- 김 등의 해조류 식품

■ 한국식품 수출확대 및 진출방안

< SWOT >

강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품 많음 - 껌, 과자, 스낵 등 식품의 가격 경쟁력 높고, 품질 우수함 농산물의 안전성, 친환경 재배기술력 높음	약점	긴 운송시간, 비용 부담 큼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음 뉴질랜드 시장 조사, 연구 자료 부족
기회	농산물 수확 시기 다름 호주 시장과 연계할 경우 시장 접근이 쉬움 관세 장벽이 높지 않고 식품에 대한 수입 허가가 어렵지 않음	위협	저렴한 중국산 식품과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 라벨링 규정이 한국과 달라 이해 필요 신선농산물과 육류에 대한 수입통관이 어려움

< 진출방안 >

- 호주의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호주와 뉴질랜드를 아울러 대양주 시장을 목표로 시장 진출을 하는 전략 필요
- 수출시 특정 제품군에 전문화된 수입상이나 유통업체, 에이전트 공략
- 개별 제품에 대한 시장 진출을 타진하는 것보다 한국 식품에 대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여 공동 마케팅 추진
- 뉴질랜드의 수입상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전시회 참가
 - FMI (시카고), ANUGA (독일), Fine Food Show (호주), SIAL (프랑스) 등이 있음
- 구매 결정권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의 매니저, 도매 식품 바이어 등을 초청
 - 한국 농산물 또는 식품체험관광을 기획·추진함으로써 시장 진출 이용



목 차

1. 일반현황	1
2. 농업현황	7
3. 식품산업 현황	29
4. 농식품 수출입현황	49
5. 수출입 통관제도	67
6. 한국식품 유통 및 수출유망 품목	105
7. 한국식품 수출확대 및 진출방안	111
8. 기타	117

1. 일반현황

가. 국가개요 3

나. 경제현황 4

1_ 일반현황

가. 국가개요

■ 일반 사항

- 위 치 : 남서 태평양
- 면 적 : 271천 km² (한반도의 1.2배)
- 기 후 : 온대 해양성
- 인 구 : 4.3백만 명 ('10)
- 수 도 : Wellington (45만 명)
- 민 족 : 유럽계 (70%), 마오리족 (8%), 아시아계 (6%), 기타 (16%)
- 언 어 : 영어, 마오리어
- 종 교 : 영국성공회 (17%), 가톨릭 (14%), 기독교 (11%)

■ 정치 사항

- 독 립 일 : 1907. 9. 26. (영국)
- 정 치 체 제 : 영국식 의원내각제
- 국 가 원 수 : Elizabeth II 영국 여왕 (John Key 수상)
- 의 회 : 단원제 (120석)
- 주 요 정 당 : 노동당 (LP), 국민당 (NZLP)
- 국제기구가입 : UN, IMF, OECD, IBRD, ADB, 영연방, WTO, APEC

나. 경제현황

■ 경제 사항

- 화폐단위 : New Zealand Dollar (NZ\$)
- 회계연도 : 7. 1. ~ 6. 30.
- 산업구조 : ('09) 서비스업 69.7%, 제조업 25.8%, 농업 4.5%
- GDP : ('08) 1,289억달러 → ('09) 1,160(추정) → ('10) 1,366(전망)
- 1인당 GDP : ('08) 30,049달러 → ('09) 26,800(추정) / ('10) 31,240(전망)
- 경제성장률 : ('08) -1.5% → ('09) -1.5%(추정) → ('10) 2.0%(전망)
- 주요 수출품 : ('09) 낙농제품 17.7%, 육류 13.2%, 임산물 26.0%, 기타 43.1%
- 주요 수입품 : ('09) 광물성연료 13.3%, 기계류 12.1%, 차량 및 부품 10.9%,
기타 63.7%
- 주요 부존자원 : 가축, 원목, 석탄, 천연가스, 철광석
- 경제적 강점 : 풍부한 자원
- 경제적 약점 : 제조업 취약

■ 최근 동향

- 2000년대 초 수년간의 호황 이후, '05, '06년에는 경기 순환적인 성장 둔화가 있었으나 2007년에는 국제 낙농제품 시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원유 생산 및 수출도 급증하면서 세계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3.2%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실현하였음
- 그러나, 2008-2009년 기간 중에는 세계경기 위축에 따라 뉴질랜드 경제성장률도 크게 영향을 받아 각각 -0.7%와 -0.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세계적인 경제분석

기관인 EIU에 따르면, 2010년도 경제성장률은 2.6%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 지진후의 재건사업 등의 2011년 GDP 성장에 약간의 상승효과를 줄 것이며, 이는 201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 EIU는 2010-2014년에는 호주와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요로 뉴질랜드 수출증대가 이어질 것이며, 뉴질랜드의 소프트 코모디티^{주)}(soft commodity) 특히 유제품 등의 수요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음

주) 소프트 코모디티(Soft Commodity) : 커피, 코코아, 설탕과 과일 등의 상품,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재료보다는 재배되는 상품을 말함

2. 농업현황

가. 농업 생산동향 9

나. 주요품목 산업전망 12

2_ 농업현황

가. 농업 생산동향

■ 농업 SWOT분석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는 다양한 농산품의 생산에 최적화된 지형 및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음. 실제로 흔히 '세계에서 가장 큰 농장' 이라고 불림 ● 농민들은 기술 혁신적이며 세계의 구매자들의 변화하는 수요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있음 ● 초원이 풍부해 가축들을 1년 내내 야외에서 방목할 수 있기 때문에 축육과 유제품의 질이 우월함 ● 해당 분야는 생산자 보조금과 가격 지원의 제약이 없어 자유로움. 농민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음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에 띄는 유일한 약점은 작은 국내 소비층임. 이는 지역 내 수익 창출을 제한하여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져 세계 무역과 환율의 변동에 생산자들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수출 국가들이 생산량을 줄임에 따라 뉴질랜드의 생산자들이 타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효율성을 무기로 세계 양고기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소비 성향이 흰살 고기 소비를 선호하는 쪽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내 가금류 산업이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해당 분야에서 기술적인 발전도 나타나고 있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업체들이 육류와 유제품의 구매를 축소(또는 연기) 함에 따라 판매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낙농업의 가격 하락과 생산자 사기저하로 위협한 상태임

■ 농업 개황

- 뉴질랜드의 국토 면적은 2,677만 ha로 한국의 2.7배에 이룸. 남섬과 북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북섬이 농업지역인데 최근에는 남섬으로 목초지 등이 확대되고 있음
- 뉴질랜드 국토는 임지(林地 : 천연림, 인공림), 무임목지(無林木地), 초지 및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음
 - 국토의 약 30%를 차지하는 임지는 주로 보전 목적의 천연림 6,200ha와 Radiata 소나무 등 소나무로 조립한 인공림 1,708천 ha로 구성되며, 국토의 26%를 차지하는 무임목지는 7,100천 ha로 황무지 등임
- 농경지 면적은 목초지를 포함해 1,092만 ha로 한국의 6.1배 수준이고, 전체 국토면적에서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뉴질랜드는 44.5%로 한국의 17.9%보다 훨씬 높음
- 농경지 면적의 대부분을 곡물 등 경종작물 재배에 활용하는 한국과 달리 뉴질랜드 농경지 중에서 목초지 면적이 약 1,100만 ha로 전체 경지면적의 92.2%임
 - 목초지를 제외한 순수 농경지는 50만 ha로 한국 농경지 면적보다 훨씬 적음
- 한편, 뉴질랜드는 1984년에 농업부문의 규제와 농업보조금을 철폐하였음. 현재 뉴질랜드의 생산자 보조 추정치(The producer support estimate : PSE)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1%대를 유지하고 있어 농업부문의 지원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농업 개혁 단행 이후 농업은 뉴질랜드 경제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음
- 뉴질랜드의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간씩 올라가는 추세이며 가공 부문까지 포함하면 전체 GDP의 약 9%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OECD 국가 중 뉴질랜드만큼 농업의 비중과 농산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도 드문데 특히, 농산물의 수출은 전체 상품수출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그 중요도가 높음. 이는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수출에 집중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생산액 면에서 살펴보면 뉴질랜드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낙농업임. 낙농업의 뒤를 이어 소와 양 목축업, 원예작물, 양모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낙농업과 원예작물 재배업은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동기간의 낙농업 성장률은 5.3%, 원예작물 재배업은 2.8%의 성장률을 기록했음. 반면, 양과 육우, 양모 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농업 전체 성장률 1.9%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뉴질랜드 농업분야의 가장 큰 직면과제는 지대 상승과 토지 이용의 제한, 면적 당 수량의 증가로 인한 환경 파괴, 농가 이윤의 하락 추세(최근 몇 년간은 제외), 임금 상승, 농촌인력 고령화, 농가 일손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요인들은 향후 뉴질랜드 농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로 여전히 남아있음
- 또 다른 문제로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있음. 온실가스 배출의 거의 반 이상이 농업과 연계되어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 향후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 4.4%이며, 임업은 0.6%, 수산업 0.1%, 식음료 및 담배제조업이 1.2%를 차지하고 있음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구 분	2004	2005	2006	2007
농업	7,539	7,665	6,795	7,450
임업	1,021	999	1,001	1,068
수산업	268	258	233	247
식음료, 담배제조업	1,339	1,553	1,830	2,047
전체 GDP	141,702	151,701	160,273	168,328

자료 : 뉴질랜드 통계청

나. 주요품목 산업전망

1) 축산업 전망

■ 공급 전망

- 지난 수년간 뉴질랜드의 축산업 분야의 생산량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였음. 2004년과 2009년 사이에는 가금류의 생산만이 증가하였을 뿐임. 2010년에는 가금류 생산량이 5% 추가로 증가하여 161,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소고기 생산량은 주로 유제품 생산의 증가로 인해 소의 도살이 적어지기 때문에 연간 4% 감소하여 615,000톤이 될 것으로 봄. 돈육 생산량은 2009/10년에 50,000톤으로 현상이 유지될 전망이다
- 전망 기간(2010~2014)에 걸쳐 가금류 산업이 좋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국내 부가가치 생산이 해당 산업의 가치와 잠재적 수익성을 증가시켜 2014년에는 가금류 생산량이 23.7% 증가하여 190,000톤에 달할 것으로 보임. 소고기와 돈육 생산량 또한 미약한 증가를 보일 것임. 소고기의 경우 낙농업 분야가 계속하여 소의 도살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1% 정도 증가하여 639,00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뉴질랜드는 세계 양고기 교역시장의 주요 구성원이며 수출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양의 숫자는 2009년에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면양은 연 5%, 어린 양은 9.8% 감소하였음. 다른 축산업과 마찬가지로 비용 상승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

■ 수요 전망

- 소비의 경우에도 가금류 산업이 축산업에서 가장 좋은 실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생산의 증가, 특히 가공 가금류 제품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2014년까지 30% 증가하여 194,5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가금류는 건강 대체 식품으로 여겨짐에 따라 소비율이 가장 높을 것임. 소고기와 돈육 소비는 비교적 변화가 없어 각각 2014년까지

4.1%, 그리고 8.7% 증가할 것임. 소고기, 돈육, 그리고 양고기 소비는 현재의 성숙 정도와 낮은 인구 증가 예측치 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 의식 때문에도 저해될 것임. 돈육 소비량의 증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전망 기간에 걸쳐 계속 주요 수입국으로 남을 것임

〈뉴질랜드- 가금류 생산량, 소비량, 무역량〉

	2005	2006	2007	2008	2009e
가금류 생산량, (천 톤) ¹	158.10	150.10	150.10	150.20	153.60
가금류 소비량, (천 톤) ¹	153.80	145.70	145.70	145.70	149.00
가금류 총 무역 수지, (천 톤) ¹	4.36	4.47	4.47	4.47	4.61
	2010f	2011f	2012f	2013f	2014f
가금류 생산량, (천 톤) ¹	161.40	166.50	174.00	181.40	190.10
가금류 소비량, (천 톤) ¹	154.20	161.90	171.10	182.90	194.50
가금류 총 무역 수지, (천 톤) ¹	7.27	4.62	2.89	-1.53	-4.42

주 : e/f=BMI 측정치/전망. 출처 : ¹ FAPRI, BMI

〈뉴질랜드- 돈육 생산량, 소비량, 무역량〉

	2005	2006	2007	2008	2009e
돈육 생산량, (천 톤) ¹	50.00	51.00	50.00	51.00	50.00
돈육 소비량, (천 톤) ¹	82.00	84.00	87.00	85.00	92.00
돈육 총 무역 수지, (천 톤) ¹	-32.00	-33.00	-37.00	-34.00	-42.00

	2010f	2011f	2012f	2013f	2014f
돈육 생산량, (천 톤) ¹	50.93	51.08	51.49	51.87	52.33
돈육 소비량, (천 톤) ¹	93.71	94.12	96.56	98.21	100.00
돈육 총 무역 수지, (천 톤) ¹	-42.78	-43.04	-45.07	-46.35	-47.67

주 : e/f=BMI 측정치/전망. 출처 : ¹ USDA, BMI

〈뉴질랜드- 소와 송아지 고기 생산량, 소비량, 무역량〉

	2005	2006	2007	2008	2009e
소와 송아지 고기 생산량, (천 톤) ¹	661.00	648.00	607.00	644.00	634.00
소와 송아지 고기 소비량, (천 톤) ¹	92.00	127.00	123.00	123.00	120.00
소와 송아지 고기 총 무역 수지, (천 톤) ¹	569.00	521.00	484.00	521.00	514.00
	2010f	2011f	2012f	2013f	2014f
소와 송아지 고기 생산량, (천 톤) ¹	615.00	607.80	618.60	629.80	639.80
소와 송아지 고기 소비량, (천 톤) ¹	121.50	122.10	123.30	124.10	124.90
소와 송아지 고기 총 무역 수지, (천 톤) ¹	493.50	485.70	495.30	505.60	514.90

주 : e/f=BMI 측정치/전망. 출처 : ¹ USDA, BMI

〈뉴질랜드 북부, 가뭄영향〉

- 2009년 말과 2010년 초에 뉴질랜드의 가장 북쪽 지역의 날씨는 수년간 가장 건조 하였습니다. 노스랜드의 강수량이 '09년 4분기에 평균 강수량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자 정부는 해당 지역을 중급 가뭄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건조한 기후는 엘 니뇨 남방 진동 현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10년 1/4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는 30년 만에 나타나는 가뭄으로 기록되었으며 많은 농민들이 대비를 하지 못 하였음. 정부는 세금 경감 조치와 건조 기후 조건 대응 방법 등으로 농민들을 지원하였음. 북부에서는 농민들이 목초지의 부족으로 가축 수를 줄임에 따라 소의 도살량이 증가할 것임

〈향후 과제〉

- 뉴질랜드의 축산업은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 생산이 감소하였음. 전국적으로 양과 육우 수가 감소하였음. 뉴질랜드식육양모협회(Meat and Wool New Zealand) 의하면 2009년 6월말에는 전국의 육우 수가 1.7% 감소한 407만 두였다고 함. 우육용 종빈우의 수는 연간 2.6% 감소한 108만 두로 거의 5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지난 3년간의 급격한 감소는 건조한 기후로 인한 목초지 감소 때문임. 높은 사료의 가격도 원인중 하나임. 장기적으로는 많은 농민들이 소고기 산업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낙농업으로 전환하였음.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적 환경에서는 올해도 육우용 소의 숫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봄

〈소고기 수출 전망〉

- 뉴질랜드 농림부(MAF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에 의하면 2007/08년에는 축육 수출 금액이 NZ\$ 46억에 달하였음. 해당 분야는 국내 소비량이 전체 생산량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여 해외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서구 지역의 뉴질랜드산 붉은 고기 수요의 성장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규 시장에서 축육 소비를 증진시키는 일이 필수적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부의 증가로 인해 소고기 수요가 증가하기는 할 것임. 해당 지역 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양을 먹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뉴질랜드의 양고기 수출 증진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곧 양고기를 새로운 식료품으로 마케팅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 금융 위기로 인한 선진국 내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뉴질랜드와 타국의 소고기 수출 업체들은 이머징 마켓 소비자들에게 더 중점을 두고 있음. 뉴질랜드의 많은 기존의

무역 대상국들은(예컨대 미국과 EU) 소고기 대신에 가금류를 섭취하기 시작하였음. 이는 경제적인 원인뿐 아니라 가금류가 소고기에 대한 건강한 대체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임. 많은 선진국들은 현재 증가하는 비만율과 싸우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에는 가금류의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를 홍보하는 것도 포함되며 이에 따라 인구당 붉은 고기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음

- 그러나 소득의 증가와 식단의 다양화로 인해 인구당 육류 소비량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이머징 마켓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음. 실제로 Rabobank는 ‘인구가 많은 이머징 마켓에서의 소비량의 증가로 인해 2019년의 소고기 소비량은 2009년 대비 15%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특히 중국은 높은 돈육 소비량과 증가 추세에 있는 소고기 소비량을 감안했을 때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 될 것임. 인도의 경우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해 소고기 소비량은 계속 낮을 것이지만 가금류의 소비량은 높아질 것임
-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과 같은 여타 아시아 국가의 GDP의 증가를 감안했을 때 중기적으로도 육류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 뉴질랜드가 아시아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신규 시장에 대한 뉴질랜드의 근접성과 우세한 접근성으로 인해 뉴질랜드의 수출업체들은 제품 판매에 이점을 갖게 될 것임. 해당 국가의 대부분에서 돈육 소비가 위법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은 소고기 수출을 하기에 아주 좋은 국가들임. 뉴질랜드는 또한 러시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중에 있어 러시아에 대한 붉은 고기 수출도 금융 위기가 국내 소비량을 극히 저해하기 전인 2008년의 US\$5600만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임. 이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미국,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지속적으로 경쟁해야 할 것임

〈돈육 수입 규정 개정안〉

- 뉴질랜드의 소규모 양돈 분야는 지난 십년간 수입으로 인한 경쟁으로 인해 성장을 못하고 있었음. USDA 자료에 의하면 10년간 돈육 소비량은 거의 50% 증가하였으나

생산은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6.4% 증가하는 데 그쳤음. 수입은 뉴질랜드 달러의 장기적인 강화에도 힘입었음. 2008년에는 양돈업자들이 사료와 연료 가격 상승의 타격을 특히 심하게 받아 많은 생산자들이 해당 산업에서 이탈하였음. 2009년에는 H1N1 돼지 독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돈육 수요는 유지되었음. 그러나 이는 수입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불식되었음. 2009년 8월에 농림부는 돼지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음. 현 규정 하에서는 수입 돈육은 절이거나 열처리되어야 함. 농민들은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과 (PRSS, 푸른 귀) 같은 질환의 전염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특히 2009년 하반기에 뉴질랜드 달러가 강화됨에 따라 수입 제품으로부터의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도 분명 있을 것임. 만일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10년에 생산량이 다시 감소할 수 있음. 더욱 장기적으로는 규정 개정의 결과와 상관없이 국내 생산자들은 EU와 같은 대형 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 제품과 경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돈육 생산량 증가율은 낮을 것이라 예상함

〈축산물 생산 변동 요소〉

- '09년 1/4분기부터 시작된 뉴질랜드 달러 강화세로 수출 소득은 불리해 짐. 뉴질랜드 달러가 '09년 4/4분기부터 조금씩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는 하지만 추가로 강화될 경우에는 뉴질랜드 축육의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 의존 농민들이 생산을 기피하게 될 수 있음
- 또 하나의 위험은 유럽 지역의 낮은 수요로서 유럽은 뉴질랜드 축산물 수출의 주요 시장임. 심한 수요 증가율 저하와 유로화의 약세가 가세하면 뉴질랜드로부터의 축육 수입이 추가로 감소될 수 있으며 이 역시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부정적 요소가 될 것임
- 또 다른 부정적 생산 위험 요소는 환경 관련 법규 강화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뉴질랜드 축산물의 수출 제품 가격이 브라질과 같은 다른 생산국에 비해 너무 비싸질 수 있다는 점임

2) 곡물 전망

■ 공급 전망

-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곡물 산업이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생산량과 경제적 중요성의 양 측면에서 방대한 낙농업 및 축산업 분야에 못 미침. 뉴질랜드는 평균적으로는 옥수수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나 밀의 수요의 절반 정도와 약간의 보리를 수입에 의존함. 전체적으로는 지난 10년에 걸쳐 곡물을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수확량은 증가하였음. 예컨대 뉴질랜드의 가장 주요 곡물인 밀의 경우 경작지의 면적은 2000/01년에는 53백만 헥타르였던 것이 2009/10년에는 그보다 32% 감소한 36백만 헥타르로 집계되었으나 동기간에 수확량은 2000/01년의 헥타르 당 6.15톤에서 2009/10년에는 25% 증가한 헥타르 당 7.69톤에 달하여 생산 효율이 상승했음을 보여줌. 이에 따라 공급이 어려워져 밀의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10년도의 뉴질랜드 밀 생산 전망치는 411.1 백만 톤으로 전년도 대비 1.9% 상승한 수치이고 2010/11년도에는 추가로 2.5% 증가하여 421.6백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보리와 옥수수 생산은 각각 1.5%와 0.4%의 증가가 전망됨
- 중장기적으로는 2013/14년도까지는 생산량이 꽤 침체되어 있을 것으로 보임. 옥수수 생산량은 4.7%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2008/09 년도에 수확량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때문이며 실제 수확량은 기존년도와 비슷한 수준일 것임. 보리와 밀 생산량은 적지만 지속적인 효율성 개선으로 2013/14년도까지 각각 9.3%와 12.9%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 수요 전망

- 2014년까지 보리, 옥수수, 그리고 밀 소비량은 각각 8.2%, 18.5%, 그리고 20.1% 증가할 것으로 보임. 작물 대부분이(주로 보리와 옥수수의 경우) 동물 사료로 사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곡물 소비에 대한 전망치는 축산업과 낙농업에 대한 전망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이머징마켓의 수요로 인해 향후 4년 간 곡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봄

〈뉴질랜드- 밀 생산량, 소비량, 무역량〉

	2005	2006	2007	2008	2009e
밀 생산량, (천 톤) ^{1,2}	318.9	261.8	344.4	343.4	403.5
밀 소비량, (천 톤) ³	650.0	650.0	650.0	603.0	590.0
밀 총 무역 수지, (천 톤) ³	-378.0	-378.0	-400.0	-310.0	-280.0
	2010f	2011f	2012f	2013f	2014f
밀 생산량, (천 톤) ^{1,2}	411.1	421.6	431.2	442.9	455.4
밀 소비량, (천 톤) ³	636.9	661.3	674.0	691.2	708.5
밀 총 무역 수지, (천 톤) ³	-293.8	-301.1	-302.8	-305.7	-308.2

주 : e/f=BMI 측정치/전망. 모든 경우에 각 년도의 자료는 해당 달력 년도에 종료하는 년도의 수확량을 일컫는다
 즉, 2009=2008-2009; 출처 : ²Statistics New Zealand, BMI, ³USDA, BMI

〈뉴질랜드- 옥수수 생산량, 소비량, 무역량〉

	2005	2006	2007	2008	2009e
옥수수 생산량, (천 톤) ^{1,2}	210.3	215.6	185.6	205.6	237.8
옥수수 소비량, (천 톤) ³	175.0	175.0	175.0	175.0	175.0
옥수수 총 무역 수지, (천 톤) ³	-2.0	-1.0	-9.0	0.0	-0.1
	2010f	2011f	2012f	2013f	2014f
옥수수 생산량, (천 톤) ^{1,2}	219.5	220.3	221.1	224.0	226.6
옥수수 소비량, (천 톤) ³	181.3	187.1	193.4	200.7	207.4
옥수수 총 무역 수지, (천 톤) ³	-1.0	-1.9	-2.4	-2.6	-3.0

주 : e/f=BMI 측정치/전망. 모든 경우에 각 년도의 자료는 해당 달력 년도에 종료하는 년도의 수확량을 일컫는다
 즉, 2009=2008-2009; 출처 : ²Statistics New Zealand, BMI, ³USDA, BMI

〈뉴질랜드- 보리 생산량, 소비량, 무역량〉

	2005	2006	2007	2008	2009e
보리 생산량, (천 톤) ^{1,2}	302.0	277.0	335.6	408.7	435.3
보리 소비량, (천 톤) ³	400.0	400.0	400.0	400.0	400.0
보리 총 무역 수지, (천 톤) ³	-24.0	0.0	-3.0	22.0	0.1
	2010f	2011f	2012f	2013f	2014f
보리 생산량, (천 톤) ^{1,2}	432.8	439.5	449.8	462.2	475.5
보리 소비량, (천 톤) ³	400.0	408.0	416.2	424.5	433.0
보리 총 무역 수지, (천 톤) ³	10.0	10.4	10.6	11.3	11.8

주 : e/f=BMI 측정치/전망. 모든 경우에 각 년도의 자료는 해당 달력 년도에 종료하는 년도의 수확량을 일컫는다
즉, 2009=2008-2009; 출처 : ² Statistics New Zealand, BMI, ³ USDA, BMI

〈곡물 이력〉

- 뉴질랜드의 밀 생산은 1987년의 밀 시장 자유화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 1987년에 수입 밀이 국가에 자유롭게 유입되기 시작한 후에 생산량은 급락하여 1986년의 379,714톤에서 1989년에 134,994톤으로 감소하였고 밀 경작지의 면적은 거의 60%가 감소하였음
- 뉴질랜드의 가장 주요한 곡물인 밀과 보리의 생산은 주로 남섬의 캔터베리 지역에서 이루어짐. 2008년에는 이 지역에서 뉴질랜드 전체 밀 생산량의 87%와 보리 생산량의 69%가 생산되었음. 옥수수 생산은 주로 북섬에서 이루어짐. 뉴질랜드 통계청 (Statistics New Zealand)에 의하면 경작지의 대부분은 플렌티만 와이카토 지역과 기즈본 지역에 위치함

3) 낙농업 전망

■ 공급 전망

- 뉴질랜드는 세계 최대의 전유와 버터 수출국이며 세계 2위의 치즈와 전유 분말 수출국임 (EU 역내 교역 제외).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뉴질랜드에서 음용유 생산량이 0.4%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2014년까지는 생산량이 8.9% 증가하여 총 18백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미 생산량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는 낙농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고 회복 중인 세계의 유제품 수요를 잘 활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함. 실제로 1등급 우유 가격이 2009년 3월의 5년 간 가장 낮은 수치였던 US\$12.32/백파운드에서 8월에 연중 가장 높은 수치인 US\$18.66/백파운드로 뛰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수요가 개선되고 공급은 적고 가격은 상승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제품 협동조합인 Fonterra가 2011년에는 생산 농민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으로는 3급 우유 가격이 2010년에는 평균 US\$14.00/백파운드, 2011년에는 평균 US\$15.00/백파운드에 달할 것이라고 봄. 이는 2011년까지 버터, 치즈, 그리고 분말 우유 생산량이 약간 증가할 것임. 버터 생산량이 2011년까지는 2.8% 증가할 뿐이지만 2014년에는 12.03% 증가하여 0.46백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치즈 생산의 경우에는 2011년까지는 2.7%, 그리고 2014년까지는 12.3% 증가하여 0.32백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함. 마지막으로 분말 우유의 생산량도 단기적으로는 3.1% 증가할 뿐이지만 2014년까지는 8.9% 증가할 것이라고 봄
- 정부와 개인 투자자들이 국가의 핵심 산업에 관여하게 되는 일차적 성장 파트너십이라는 형태의 성장 요소도 있음. 해당 정책에 따라 정부는 NZ\$ 170백만(US\$120.8백만) 규모의 낙농업 정책에 NZ\$ 84.6백만(US\$60.11백만)를 투입하게 되고 NZ\$ 151백만(US\$107.3백만) 규모의 육류 정책에 NZ\$ 59.5백만(US\$42.3백만)를 투입하게 됨. 이러한 7년 단위 정책들은 기존 정부의 Fast Forward Fund를 대체하게 됨. Fonterra와 Dairy NZ가 주도하는 낙농업 정책의 목표는 2020년까지 농민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고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며 농장 생산성을 증대하려는 데 있음

■ 수요 전망

- 뉴질랜드의 낙농업은 국내 소비보다는 국제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음. 이미 높은 소비량과 적은 인구로 인해 국내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2014년까지 음용유 수요는 4.1% 정도 증가하고 가공된 유제품의 수요는 대체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물론 최근의 잘못된 중국의 우유 생산 회사와 제휴한 국내 낙농업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NZ\$ 2백만(US\$1.42백만) 규모의 'GoDairy' 캠페인을 포함한 새로운 홍보 전략이 Fonterra와 같은 국산 상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임

〈뉴질랜드- 우유 생산량 및 소비량〉

	2005	2006	2007	2008	2009e
우유 생산량, (천 톤) ¹	14,500.0	15,200.0	15,640.0	15,141.0	16,601.0
음용유 소비량, (천 톤) ¹	360.0	360.0	360.0	345.0	331.0
	2010f	2011f	2012f	2013f	2014f
우유 생산량, (천 톤) ¹	16,668.0	16,976.0	17,327.0	17,697.0	18,072.0
음용유 소비량, (천 톤) ¹	344.3	344.3	344.4	344.4	344.5

주 : e/f=BMI 측정치/전망. 출처 : ¹ USDA, BMI

〈뉴질랜드- 버터 생산량, 소비량, 무역량〉

	2005	2006	2007	2008	2009e
버터 생산량, (천 톤) ¹	385.4	406.9	402.7	399.2	408.2
버터 소비량, (천 톤) ¹	26.0	26.0	24.2	23.0	23.3
버터 총 무역 수지, (천 톤) ¹	344.2	407.6	395.4	373.8	382.9

	2010f	2011f	2012f	2013f	2014f
버터 생산량, (천 톤) ¹	419.0	427.8	437.6	447.7	457.3
버터 소비량, (천 톤) ¹	23.3	23.1	22.9	22.7	22.4
버터 총 무역 수지, (천 톤) ¹	391.2	399.3	408.3	417.6	426.3

주 : e/f=BMI 측정치/전망. 출처 :¹ FAPRI, BMI

〈뉴질랜드- 치즈 생산량, 소비량, 무역량〉

	2005	2006	2007	2008	2009e
치즈 생산량, (천 톤) ¹	297.0	292.0	350.0	292.0	294.0
치즈 소비량, (천 톤) ²	28.0	28.0	25.7	24.0	26.6
치즈 총 무역 수지, (천 톤) ¹	263.0	264.0	306.0	277.0	271.0
	2010f	2011f	2012f	2013f	2014f
치즈 생산량, (천 톤) ¹	302.0	300.5	307.9	315.4	321.0
치즈 소비량, (천 톤) ²	26.7	26.8	26.8	26.9	27.0
치즈 총 무역 수지, (천 톤) ¹	275.1	274.0	279.2	284.6	288.5

주 : e/f=BMI 측정치/전망. 출처 :¹ USDA, BMI, ² FAPRI, BMI

〈뉴질랜드- 전유 분말 생산량, 소비량, 무역량〉

	2005	2006	2007	2008	2009e
전유 분말 생산량, (천 톤) ¹	585.0	611.0	671.0	651.0	754.0
전유 분말 소비량, (천 톤) ¹	1.0	1.0	1.0	1.0	1.0
전유 분말 총 무역 수지, (천 톤) ¹	584.0	633.0	669.0	620.0	749.0
	2010f	2011f	2012f	2013f	2014f
전유 분말 생산량, (천 톤) ¹	777.6	787.5	798.3	807.6	821.4
전유 분말 소비량, (천 톤) ¹	1.0	1.0	1.0	1.0	1.0
전유 분말 총 무역 수지, (천 톤) ¹	777.1	787.2	798.2	807.7	821.9

주 : e/f=BMI 측정치/전망. 출처 : ¹ USDA, BMI

〈낙농업 강국, 뉴질랜드〉

- 1990년대 초반부터 뉴질랜드의 낙농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왔음. 방대한 목초지 지역을 낙농업 농장으로 전환시켰고 규모와 생산성도(헥타르 당 생산성 및 두당 생산성) 상당히 증가하였음
- 현재 뉴질랜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낙농업 협동조합은 크게 3곳이 있음: Fonterra, Westland, 그리고 Tatura로 Fonterra가 확연히 크며 이 세 곳이 우유의 96%를 생산함. 다국적 선두 기업으로 Fonterra는 세계에서 거래되는 유제품의 약 40%를 생산하며 전유 분말과 카세인과 같은 유제품 성분의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뉴질랜드의 유제품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들은 미국, 중국, 일본, EU, 멕시코, 그리고 필리핀임. 뉴질랜드는 수출 보조금과 같은 가격 지원이나 보호 조치에 의존하지 않고 유제품 수출의 선두 주자가 되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임

〈Fonterra 구조 조정〉

- Fonterra의 농민 주주들은 해당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NZ\$ 270.7백만(US\$191.4백만)에 달하는 협동조합의 주식을 인수 하였음. 농민들은 이제 자신의 우유 생산량에 비례하여 보유하는 주식의 수를 유연하게 변동시킬 수 있게 되었음. 이는 주식 보유량이 전체 우유 생산량에 따라서 엄격하게 변동되기로 하였던 원래의 합의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임. 이러한 개선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Fonterra는 원래 예상보다 적은 자금을 조성하였음. 이는 2008년의 세계적 금융 위기에 따른 유제품 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금융 위기의 주 영향 중 하나는 이머징마켓의 많은 소비자들이 식단에서 우유와 여타 유제품을 배제시켰다는 것임. 실제로 세계의 우유 소비량은 2009년에 2008년 대비 20% 감소하였으며 다른 가공 유제품의 소비도 평균 24% 감소하였음. 이러한 수요의 감소로 농민들은 Fonterra 및 타스만 지역의 동업자들로부터 2009년에 더 적은 지불금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민들의 현금 유동성이 저하되었음
- 2011년까지 우유 소비량이 4.5% 정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며 세계적으로 우유 가격도 2011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대형 유제품 공장 건설〉

- 2010년 4월에 Fonterra는 뉴질랜드의 켄터버리 지역에 대규모의 우유 처리 공장을 신규 건설하고 2012년 9월까지 운영을 개시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Fonterra의 거래 영업담당 이사는 켄터버리는 전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유제품 생산 지역 중 하나이며 앞서 언급한 계획은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국내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중 가장 대규모의 투자라고 밝힘. 이 공장과 관련하여 고려하고 있는 방안 중에는 하루에 2.2백만 리터의 우유를 가공할 능력을 갖춘 고효율 분말 우유 공장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유제품 수출국으로서의 뉴질랜드의 지위를 더욱 향상시켜줄 것이라 기대됨

〈이머징마켓에 대한 투자 가속화〉

- 2009년 후반과 2010년 초반은 Fonterra의 해외 사업부가 아주 바쁘게 움직인 시기였음. 2009년 10월에 Fonterra는 MYR 25백만(US\$79백만)을 투자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Fonterra Dairymas 배양 음식 공장을 확장하였음. 해당 공장의 관리자는 인터뷰를 통해 말레이시아를 2008/09 회계연도의 수입이 19% 증가하고 배양 유제품 판매가 71% 증가한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Fonterra 혁신 허브로 키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 이는 또한 마진이 더 높은 유제품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전략을 반영하고 있음
- 그 이후 2009년 12월에 당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Saudi Dairy & Foodstuff사의 파트너를 인수하였다고 발표하였음. 블룸버그 통신은 Fonterra가 해당 회사의 지분 51%를 인수하기 위해 NZ\$ 45백만(US\$31백만)을 지불하였다고 밝혔음. 이러한 행동은 당 협동조합이 동남아와 중동이라는 이머징마켓 내의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보여줌
- 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은 유제품 소비의 증가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중국에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2010년 2월에 발표하였다는 점임. Fonterra는 2008년의 멜라민 오염 사건으로 인해 중국에서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음. Fonterra가 지분의 43%를 소유하고 있는 중국의 주요 유제품 회사인 Shijiazhuang Sanlu Group은 사건의 주범 중 하나였고 사건 직후 무너졌음
- Fonterra는 이제 85%의 지분을 가지고 중국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장과 2개의 농장을 추가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음. 현지 파트너와의 추가적인 협력도 고려하고 있음. 두 개의 새로운 농장은 허베이 지역에 위치한 Tangshan Fonterra Farm 인근에 위치하게 될 것임. NZ\$ 20.7백만(US\$14.7백만) 규모의 Tangshan 농장의 생산량은 계획보다 빨리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생산품의 품질은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우유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음. 두 개의 새로운 농장들은 각각 35헥타르 정도의 규모로 지어질 것임

-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의 성장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Fonterra가 중국 유제품 시장에 다시 뛰어들 것은 자명함. 실제로 중국의 큰 유제품 시장은 작년에도 연간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중국의 인구 당 소비가 여전히 낮기 때문에 시장 잠재성이 매우 큼. Fonterra는 전문성과 농장 운영 능력, 중국 파트너들의 자본을 활용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높음
- 2008년에는 Fonterra가 중국의 유제품 시장의 5%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외국 유제품의 전체 판매량은 중국 시장의 12%를 차지하였음. 중국에서는 불순물 사건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거의 현지 협력사가 받았기 때문에 Sanlu와의 불명예스러운 사건에 관여하여 명예가 손상된 정도는 중국보다 뉴질랜드에서 더 심하였음
- Fonterra는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며 우리는 당사가 앞으로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기대함. 이는 특히 중국이 미국에 이어 뉴질랜드의 두 번째로 큰 유제품 수출 시장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함.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투자가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투자의 시발점이라고 봄

〈자유무역협정 파급효과〉

- 2009년 11월 초에 뉴질랜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그리고 오만을 회원국으로 둔 걸프 협력 회의와(GCC) 자유무역협정을(FTA) 체결하였음. 2008/09년도에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은 총 NZ\$ 750백만에 달하였음. 이 정도의 규모로는 GCC가 뉴질랜드의 가장 주된 수출 시장에 속하지는 않지만 중동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의 유제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관세의 인하는 뉴질랜드의 수출 유제품이 더 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끔 도울 것으로 전망
- GCC FTA는 뉴질랜드의 유제품 수출을 위한 주요 시장과의 일련의 무역 협정중 가장 최근의 것일 뿐임. 2년 전인 2008년 10월에 뉴질랜드와 중국 간의 FTA가 발효되었음. 이후 2009년 2월에 태국에서 아세안 FTA에 서명하였고 2009년 10월에는

칼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와의 FTA가 체결되었음. ASEAN은 이미 뉴질랜드 유제품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며 중국으로의 수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해당 시장에서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아시아 소비자의 서양 음식에 대한 관심 증가는 뉴질랜드의 해당 지역에 대한 유제품 수출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음을 보장해줌. 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중국의 경우 2019년까지, 그리고 ASEAN의 경우 2020년까지 완전히 제거될 것임. 이는 뉴질랜드 수출품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임. 한국과의 FTA도 진행 중에 있음. 협의는 2009년 6월에 시작되었고 9월에 2차 협의가 이루어졌음. 한국은 뉴질랜드 유제품의 주요 시장은 아니지만 치즈와 같은 고가의 수출품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음

- 또 하나의 유의 사항은 Fonterra가 유기농 우유 생산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임. 지금까지 Fonterra는 적극적으로 유기농법으로 전환할 농민들을 모집하였고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 내에 유기농 우유 생산량을 140% 확장할 예정임. 2010년에는 2009년 대비 유기농 우유 공급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Fonterra가 유기농 우유에 대해 지불하는 기존의 우유 가격보다 17% 높은 지불금은 몇몇 경쟁자보다 낮은 수준임. BMI는 낙농업이 국제 유기농 시장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 착안, Fonterra의 이러한 활동은 더 마진이 높은 제품군으로 사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음

<기타 염소 가공유>

- 염소 젖 또한 뉴질랜드의 수출상품으로 인기가 있음. 북섬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해밀턴 소재 Dairy Goat Co-Operation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생아용 염소 가공유를 생산함. 5년 만에 700만 달러에서 4,000만 달러로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대만을 중심으로 남미 및 중동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용 분유를 개발해 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3. 식품산업 현황

가. 시장특성	31
나. 유통구조	44

3_ 식품산업 현황

가. 시장특성

1) 뉴질랜드 식품시장 규모

- 2008년 뉴질랜드의 전체 식료품 소매판매액은 NZ\$ 246억 규모로 추정 (Coriolis Research, 2008년 6월)
- 제과 시장만으로 한정시킬 경우 NZ\$ 22억(2003년)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연간 5%의 꾸준한 성장(1996년 ~ 2003년)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소비자용 식품의 수입은 US\$ 173억으로 식품 산업에서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음 (2008년)
-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대부분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호주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어 그 비중은 47%를 차지하는데 이는 생산 시설이 많지 않은 뉴질랜드의 특성에 기인하며 다국적 식품 기업의 경우에는 호주를 생산 근거지로 하여 뉴질랜드 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음. 그 외에 주요 식품 수입국은 미국(10.2%), 중국 (4.3%)의 순으로 이어짐
- 호주에서 주로 수입하는 식품은 와인, 식품 원재료, 스낵류, 빵·쿠키류, 동물사료, 냉동육 등이며 미국에서는 주로 동물 사료, 식품 원재료, 냉동육, 과일 및 채소 농축액, 과일, 견과류, 건조과일 및 소스류 등임. 중국으로 부터의 식품 수입은 2006년 US\$48백만이었으나 2008년에는 US\$75백만이 이를 정도로 최근 급격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뉴질랜드와 중국간에 맺은 자유무역협정 (FTA)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됨
- 뉴질랜드는 인구가 많지 않아 내수 시장의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대부분을 수출에 집중하는 구조임. 전체 농업 생산물의 약 85%를 수출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NZ\$ 200억(한화 약 17조원) 수준임. 특히 낙농품, 육류, 키위, 와인, 수산물 등은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들로서 농식품의 수출이 전체 상품수출의 60%에 달함. 뉴질랜드 정부도 식품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농수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10%인 40만 명 이상이 식품 관련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에 농수축산물의 일차 생산에 종사하는 인구는 14만 명 정도로 전체 고용인구의 약 12% 정도임

〈뉴질랜드 식음료 매출액 (2004년)〉

(단위 : NZ\$)

구 분	내수	수출	계
낙농제품	1.4	6.4	7.8
육류	2.0	4.6	6.6
과일 및 채소	1.5	2.0	3.5
음료	2.9	0.6	3.5
수산물	0.2	1.2	1.4
곡물	1.0	0.1	1.1
기타	3.4	0.4	3.8
합계	12.4	15.3	27.7

자료원 : Coriolis Research

2) 식품소비 트렌드

-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1971년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했던 유럽계 인종이 2021년에는 약 65% 정도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는 아시안 이민자 등의 유입 증가와 유럽계 및 비유럽계의 출산율 차이로 인한 결과임. 이에 따라 뉴질랜드의 식품 시장도 점차 다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그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

〈뉴질랜드 인종별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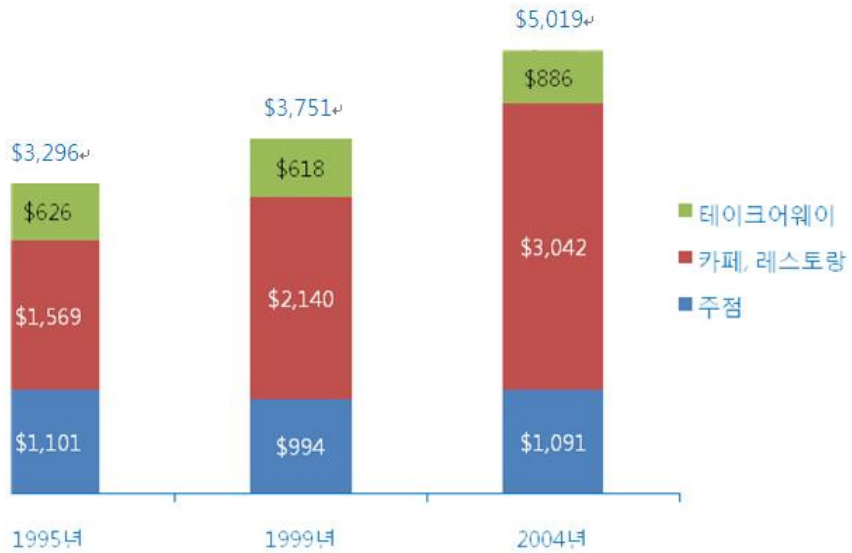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인종별	1971년	1981년	1991년	2001년	2011년 (예상)	2021년 (예상)
아시아인	24	32	109	249	330	439
퍼시픽	42	104	118	247	307	373
마오리 (원주민)	227	384	435	598	686	772
유럽계 및 기타	2,566	2,623	2,773	2,767	2,860	2,897
합계	2,861	3,143	3,435	3,861	4,183	4,481

자료원 : Statistics New Zealand

- 출산율의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이 인구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세대 구성은 빠르게 소규모화되고 있음. 또 다른 나라에 비해 여성의 사회 진출과 취업률이 높고, 일인 세대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점, 그리고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점 등이 최근 뉴질랜드가 보이고 있는 주요 특징으로 이에 따라 조리가 간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냉동식품 및 즉석식품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전자렌지의 보급 속도가 빨랐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음
-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뉴질랜드의 소비자들도 점차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유기농산물, 저지방, 저칼로리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뉴질랜드의 외식산업은 대부분 소규모의 카페와 레스토랑이 차지하고 있으며 (61%, 2004년) 이는 관광객 및 현지인의 외식비 지출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외식 시장 규모의 성장 (1995년 ~ 2004년)



자료원 : Coriolis Research, 2005년

3) 식습관 및 식문화

- 뉴질랜드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의 주된 식사를 함. 아침은 주로 토스트, 시리얼, 과일 또는 포리지로 구성되는데 출근을 위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주말에는 여전히 베이컨, 계란, 그리고 토스트로 구성된 전통적 영국식 아침이 인기가 있음. 아침은 하루 활동을 하기 위해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때로 여겨졌으며 많은 시리얼 판매사들은 마케팅을 할 때 건강상의 이점을 강조함. 그러나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하여 아침을 거르고 점심 전에 다른 간식을 하고 있음. 이는 출근길에 마시는 아침용 건강 음료와 같은 제품의 인기로 이어지고 있음. 생산업체들은 특히 아침을 더 많이 거르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루의 시작에 아침을 먹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중간인 정오와 1시 사이에 점심을 먹고 있으나 점차 많은 이들이 업무 부담이나 그 시간대에 바쁜 생활 양상으로 인해 점심을 더 늦게 먹고

있음. 점심은 주로 샌드위치, 파이, 샐러드 등으로 구성되며 집에서 점심을 싸가는 대신 음식 소매 업장에서 점심을 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람들이 주로 소비하는 음식의 범위가 조리된 음식을 포함하도록 넓어졌으며 현재는 아시아 음식이 특히 인기가 높음. 예를 들어 초밥은 많은 바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즐기는 편하고 건강하며 유행하고 있는 대안임. 점차 조리된 음식을 많이 팔고 있는 카페에서 점심을 즐기는 이들도 늘고 있음. 특히 바쁜 사무실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으로는 아예 점심시간이 없는 직장인이 생기고 있음. 그들은 일을 계속하며 책상에 앉아 식사를 함

- 저녁은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로 6시나 7시 사이에 먹는데 독신자들이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상당히 늦은 시간에 먹기도 함. 대부분의 사람은 저녁을 하루의 가장 주된 식사로 봄. 식사량은 점심보다 많은 경우가 보통이며 대부분의 뉴질랜드 식탁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육류 한 가지와 야채 3가지 구성을 찾아볼 수 있음. 그러나 뉴질랜드 내 레스토랑의 수와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며 외식도 점점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근로 시간이 더 길어져 집에서 요리를 할 시간이 적어지고 있음
- 간식과 식사를 ‘떼우는’ 일도 점점 흔해지고 있으며 비만과 과체중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자주 받고 있음. 간식 시장을 겨냥한 많은 제품은 과자 봉지, 초콜릿 바, 개별 포장된 크래커와 딥, 날개 포장한 비스킷, 작은 요거트 통, 그리고 작은 과일 캔과 같은 양이 적은 날개포장 제품으로 제공됨.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사이즈의 다양화와 특히 날개포장한 제품의 출시가 지난 20년간 업자들이 다양한 소비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실시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음. 최근에는 식단과 체중 증가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증가로 인해 더 건강한 간식 섭취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였음. 생산자들은 수요변화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강한 간식은 주로 많은 양의 과일과 적은 양의 지방 및 염분과 연관됨
- 뉴질랜드 통계청은 2007년 3월자 보고서를 통해 2007년 1월에 테이크아웃 음식의 소비가 NZ\$ 1억 3백만에 달하였다고 발표하였음. 햄버거, 피쉬앤칩스, 파이, 아이스크림, 피자, 그리고 에스닉푸드의 판매량은 1995년에서 2002년 사이에 크게 변동하지

않았으나 2002년 이후에는 88% 급증하였음. 이러한 경향은 특히 비만에 대한 우려에 비추어 보아 걱정스러우며 사람들이 계속 고지방 고당, 고가공 편의 식품을 구매할 경우 문제는 악화될 것임

- 보건부는 식습관과 영양 섭취의 편차를 찾아내기 위해 2개의 주요 연구를 실시하였음. 2002년에 National Children's Nutrition Survey가 어린이 5명 중 2명만이 권장 과일 섭취량을(하루 2개 이상) 섭취하고 있었으며 5명 중 3명이 권장 야채 섭취량을(하루 3개 이상) 섭취하고 있음을 밝혀냈음. 고기, 생선, 그리고 가금육 중에서는 닭고기가 가장 많이 섭취되었으며 2000년과 2005년 사이에 닭고기 판매량이 20% 증가하였음. 가장 많이 소비되는 빵은 흰 빵임. 아이들의 절반 정도가 빵과 함께 마가린이나 마가린 관련 제품을 섭취하였으며 가장 흔히 먹는 간식은 국수였음. 설문 결과 여아의 79%와 남아의 86%가 아침에 학교를 가기 전에 음식을 섭취하였으나 더 '열악한' 지역에 사는 이들이나 마오리나 태평양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 수치가 더 낮았음. 아이들의 약 84%가 학교에서 섭취하는 음식의 대부분을 집에서 가져왔음. 부모/양육자의 약 78%가 자신의 가정이 항상 제대로 음식을 섭취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 이 연구는 (어른에 초점을 맞춘) 1997년의 National Nutrition Survey의 후속 연구임. 이 연구에서는 성인 인구의 94%가 정상적(즉 잡식성) 식단을 가지고 있으며 성인의 3분의 1 정도가 식단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었다고 나타났음. 이는 남성(28%)보다 여성(39%)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음. 비만과 심장 질환에 관한 인식 증진 캠페인이 효과를 나타내 성인들의 22%가 고지방 음식 섭취를 줄이려 하고 있으며 14%가 과일을 더 섭취하려 하고 있었음. 뉴질랜드 성인의 경우 전체 식품군 중에서 빵이 가장 큰 에너지원이었으며(11%) 15-24세 사이의 젊은 성인들의 경우에너지 섭취량의 약 10%가 무알코올 음료에서 왔음. 버터와 마가린은 뉴질랜드 성인의 전체 지방 섭취의 15% 정도를 차지하였음. 여성들은 남성보다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선택하였으며 뉴질랜드 성인 5명 중 1명 정도만이 뉴질랜드 Nutrition Taskforce(1991)의 지침에 따라 하루에 6회분 이상의 빵과 곡물을 섭취하였음. 성인의 3분의 2 정도가 하루 최소 3회분의 야채를 섭취하였으며 약 절반 정도가 하루 2회분 이상의

과일을 섭취하였음.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하루 1회분 미만의 과일을 섭취하는 경향이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일부 지역 건강 기관들이 건강한 음식과 운동에 관한 인식 증진 캠페인의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정책을 시험하고 있음. 예컨대 마누카우 지역 건강 위원회(Manukau Regional Healthboard)는 맥도날드의 매장에 정상적인 설탕 함유 Sprite 대신에 인공적으로 단맛을 낸 Sprite Zero를 배치하는 방법으로 청량음료 분야를 겨냥 하였음. 당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제품의 가격이 더 낮추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있음. 동시에 건강 위원회는 건강한 음식 선택과 운동에 관한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음. Otago 대학의 인체영양학 교수 Jim Mann은 유제품 프로젝트가 Sprite Zero 정책보다 더 광범위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전반적으로 전형적인 구미식의 식습관을 가지며 최근 아시안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중식, 일식, 타이식 등 아시안 식당이 보편화 되었으며 대형 슈퍼마켓에도 아시안 식품이 눈에 띄게 늘어남
- 세계적으로 체인을 가지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이 뉴질랜드에도 많은 매장을 가지고 영업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테이크어웨이 샵이 꾸준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스시(김밥 roll 형태)가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그 인기가 높아 많은 스시 전문점이 생겨났으며 그 인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 특히 사무실 밀집 지역이나 도심지의 경우 그 경쟁이 치열한 상태임
- 영국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차보다 커피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로컬 브랜드로 로스팅하여 판매하는 커피를 선호하며 많은 커피 로컬 브랜드가 있음
- 뉴질랜드는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의 수가 상당히 많은 나라 중의 하나로서 약 25%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gluten-free 제품의 수요가 많아 2007년에는 그 규모가 NZ\$ 22백만 정도로 추정되며 2011년에는 NZ\$ 50백만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FMCG Magazine, 2009년 6월)

- 풍부한 해양자원의 영향과 신선 식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신선 식품

- 뉴질랜드인들의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인식은 지난 20년에 걸쳐 점차 증진되었음. 이전의 세대들은 식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반면, 인구 대부분에게 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건강한 식습관에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음
-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가장 큰 소비량 증가를 보인 신선 식품 분야는 기타 육류(47%), 카사바(63%), 그리고 사과(35%)였음. 판매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포도(13%)와 소고기와 송아지 고기(8%)였음
- 이러한 신선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는 'Five Plus a Day'나 Heart Foundation Tick과 같은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신선 식품의 건강과 영양상의 이점을 인지하게 되어 생긴 태도의 변화와 식품에 대한 지출 금액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임. 식단 관련 질병을 피하는 일과 관련한 신선식품의 역할, 기능성 식품의 이점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비만에 대한 현재의 우려에 힘입어 신선 식품의 인구 당 소비량의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뉴질랜드 건강식품 운동의 일부는 유기농 음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오랫동안 유기농 식품의 소비는 비유기농 식품 소비보다 낮았음.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보통 식품에 살포되는 농약과 화학물질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건강한 선택을 하기 위해 구매를 하는 것임. 그러나 유기농 식품의 생산 비용은 보통 비유기농 식품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많은 가정에게 경제적이지 못 한 선택임. 그러나 유전자 변형과 음식에 유전자 조작된 상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근의 논의로 인해 농약과 화학 물질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었으며 이 때문에 유전자 조작 상품이 들어있지 않은 식품을 구매하는 이들이 많아졌음. 유기농 식품은 이러한 경향의 덕을 많이 봤으며 생산자들은 건강에 좋은 천연 식품이라는 이미지를 이용해 더 큰 성장을 이루려 하고 있음. 2001년에 Otago 대학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유기농 시장의 크기를 약 US\$200억으로 추정하고 연간 성장률이 20-25%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이러한 성장세는 스웨덴 같이 이미 ‘성숙된’ 시장에서는 둔화되고 있음. 비유기농 식품의 판매 증가율은 연 3-5% 정도로 예상됨. 유기농 마케팅 노력은 식품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음. 유기농 슈퍼마켓의 설립, 편의성 높은 유기농 식품의 개발, 생분해성 포장의 사용,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구매 가능성 등도 활용되고 있음. 유기농 농산물의 유통망 중에서는 슈퍼마켓이 가장 큰 성장을 보이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기농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다른 신선 식품 분야보다 과일에서 3-5% 높게 나타남. 뉴질랜드 슈퍼마켓은 이러한 추세에 따라 더욱 다양한 종류의 유기농산물을 제공하고 있음

- 신선 과일과 야채 분야에서는 미리 포장된 샐러드와 야채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음. 슈퍼마켓에서 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여기서는 판매되는 포장 샐러드의 75%가 mesculen spring mix와 같은 ‘고급’ 상추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5%만이 아이스버그 상추를 사용함) 패스트푸드 체인점들도 당근이나 아이스버그 상추 샐러드 대신에 포장된 혼합 샐러드를 판매하고 있음. 유기농 포장 샐러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커트 야채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고(미국의 30% 대비 뉴질랜드에서는 5% 차지하고 있음) 소매업 전문가들은 조각 과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는 소비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함
- 그러나 다양한 공급자 측의 요소들도 가격을 통해 신선 식품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소비 패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신선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는 편의 식품 분야의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분야 별 신선 식품 소비량 : 2000/2005〉

인구 당 kg	2000	2005	2000-2005 사이 % 변화
소고기와 송아지 고기	28.9	26.7	-7.62
양, 새끼양, 염소 고기	21.0	22.6	7.84
돼지고기	16.7	18.2	9.29
닭고기	25.6	30.9	20.48
기타 육류	3.2	4.8	46.58
생선	21.0	24.5	16.70
갑각류	1.3	1.3	3.31
연체동물과 두족류	1.6	1.6	2.50
콩	1.1	1.2	15.91
완두콩	2.2	2.7	24.53
토마토	26.0	26.7	2.69
기타 야채	104.1	112.0	7.56
감자	68.7	76.8	11.72
카사바	0.5	0.8	63.45
고구마	3.5	3.5	-2.03
오렌지, 귤, 탄제린	10.2	12.7	25.28
레몬과 라임	0.5	0.5	21.34
바나나	13.3	14.4	7.78
사과	21.8	29.5	35.21
파인애플	2.2	2.2	0.60
포도	7.7	6.7	-13.24
기타과일	28.3	30.4	7.15
계란	9.5	9.3	-2.21
설탕과 감미료	55.2	59.3	7.40

출처 : 거래 자료를 이용한 Euromonitor International 측정치

주 : '붉은 고기' 에는 소고기, 양고기, 새끼양 고기, 송아지 고기, 그리고 염소 고기가 포함됨

■ 포장 및 가공 식품

- 많은 서양 국가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도 사람들은 점점 바빠지고 요리할 시간이 줄고 있음. 편의 식품 판매량은 늘고 있으며 가공 식품이 현재 많은 이들의 식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흰 빵과 같은 가공 수준이 높은 제품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층에서 더 두드러짐. 냉동식품 시장은 2000년과 2005년 사이에 16% 성장하였음. 소매업자들은 2003년에는 농산물 시장에서 포장/편의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하였으나 오늘날 이 수치는 7-8% 정도이며 3년 내에 10-11%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함
-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식품 분야는 인스턴트식품(25%), 과자류(17%), 식사 대체품(17%), 그리고 냉장 가공 식품(16%)이었고, 지방과 기름 판매는 3% 감소하였음. 인구 당 소비량이 가장 큰 제품군은 유제품이었음

■ 외식

- 외식은 친목을 다지거나 여가를 즐기는 인기 있는 방법임. 식당은 McDonald's와 같은 다국적 체인점에서 다양한 에스닉 식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동남아 요리 식당이 특히 많음. 이러한 식당은 크게 편의를 위해 찾는 편의 식당과 더 공식적이거나 사교적인 목적으로 찾는 풀서비스 식당으로 나눌 수 있음. 전자의 성장은 부분적으로는 더 바빠진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부의 증가에 기인함. 풀서비스 식당을 찾는 손님은 가격의 하락과 사교적인 자리로서의 이용도의 증가, 그리고 부의 증가에 힘입어 증가하고 있음. 식당과 패스트푸드점의 수와 다양성의 증가는 변화하는 수요와 더욱 다문화적인 사회의 발달을 반영하고 있음. 피쉬앤칩스를 기본으로 하였던 예전의 뉴질랜드 패스트푸드 업계의 이미지는 바뀌고 있음. 뉴질랜드인들은 이제 더욱 다양한 테이크아웃 음식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음. 적정 수준의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인도, 이탈리아, 중국, 그리고 태국 등의 요리점을 포함한 에스닉 식당 수의 증가와 아시아 스타일의 음식점의 증가는 이민자와 외국인 학생 수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하나의 식당만을 감당할 수 있었던 많은 지역이 이제는 여러 식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이는

외식의 증가와 에스닉 요리의 인기 상승을 보여주는 현상임. 전통적인 패스트푸드 분야는(피자와 햄버거 중심의) 이제 5개의 주요 소매업자가 지배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선호도는 다양해졌으며 샐러드와 같은 건강한 대체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상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상품이 이 분야의 주 수입원임

- 식당 외에도 뉴질랜드 내 커피바의 숫자도 1990년 이후부터 도시와 지방에서 급격히 증가하였음. 일례로 Wellington의 이미지는 회색 빛 공무원의 도시에서 국가의 ‘커피 수도’로 바뀌었음 이 도시의 인구 당 카페와 레스토랑 수는 뉴욕보다 많은 상태임
- 인구 당 식당에서 지출한 금액은 2005년 2000년 대비 NZ\$ 373 증가하여 NZ\$ 1,542를 기록하였음.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분야는 패스트푸드(NZ\$95, 40%)와 100% 배달/포장(NZ\$ 78, 44%) 업계였음. 가판대와 키오스크의 판매량은 4% 증가하였음. 이러한 성장의 요인은 더욱 바쁜 생활 양상(이 때문에 집에서 요리할 시간이 줄어들), 부의 증가, 식당 음식의 전반적인 비용 하락 그리고 제공되는 음식의 다양성의 증가로 볼 수 있음
- 비만과 유제품 관련 건강 문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푸드의 선호 경향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상당히 강한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됨

〈분야 별 외식 지출 금액〉

인구 당 NZ\$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카페/바	211.9	217.7	227.6	241.1	256.3	270.8
풀서비스 식당	535.7	568.5	600.6	632.1	653.7	676.7
패스트푸드	237.9	262.1	280.4	297.2	315.1	333.0
100% 배달/포장	176.0	197.2	212.3	229.8	243.1	253.5
셀프 카페테리아	0.8	0.9	0.9	1.0	1.0	1.0
가판대/키오스크	6.8	6.6	6.7	7.0	7.0	7.1
합계	1,169.1	1,252.9	1,328.5	1,408.3	1,476.4	1,5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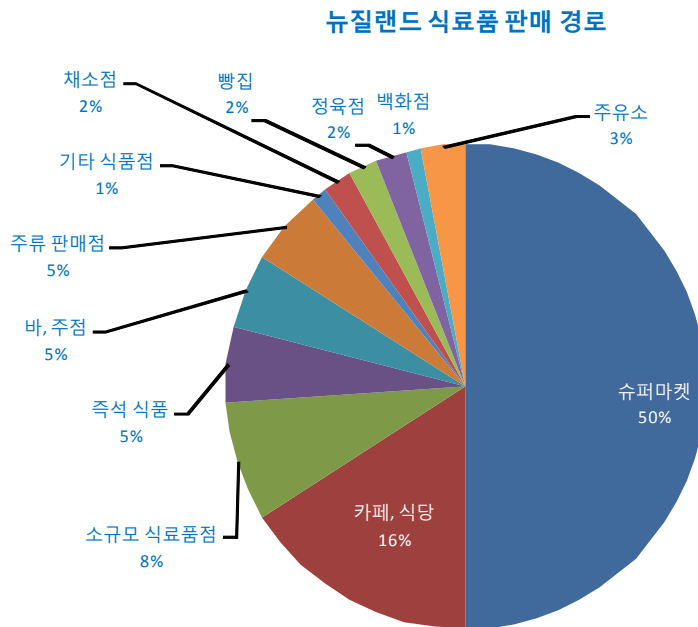
출처 : 거래 자료를 이용한 Euromonitor International 측정치

4) 시장동향

- 뉴질랜드는 지난 몇 년간 소비식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2008년에는 US\$ 17.3억에 달했음. 호주는 뉴질랜드의 최대 수입국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10.2%), 중국(4.3%) 순. 최근 중국 식품의 수입이 2006년 US\$ 48백만에서 2008년 US\$ 75백만으로 상당량 증가하였고 주요 수입 품목은 과일 주스, 과자류, 견과류, 식품 원재료, 제빵 관련 원재료 등임
- 뉴질랜드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뉴질랜드의 식품 가격 인상률은 OECD 가입 국가들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하며 2000년 이후 식료품의 가격은 42.5% 인상되어 호주(41.3%), 영국(32.9%), 미국(28.4%)에 비해 상당히 높는데 이는 두 개의 소매 유통 체인이 판매를 독점하고 있어 가격 경쟁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Stuff.co.nz, 2009년 11월)
- 소매 유통점의 대형화는 뉴질랜드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그 경향이 아주 뚜렷함. 특히 두 개의 거대 소매 유통점은 강력한 구매력으로 제품의 저가 공급을 유도하고 있으며 유통 라인이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음. 대략 식품 판매의 절반 이상이 대형 소매 유통점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2009년 1월 슈퍼마켓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되며 카페·식당과 바·주점 매출은 각각 2.4%,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의한 결과로 분석됨 (National Business Review, 2009년 3월)
- 최근의 경기 침체로 인해 뉴질랜드 역시 소비 형태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소규모 편의점보다는 슈퍼마켓을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남 (C-Store Magazine, 2009년 4월). 하지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패스트푸드류(파이, 소시지롤, 샌드위치 등)의 판매는 오히려 늘어남 (FMCG Magazine, 2009년 5월)

나. 유통구조

- 뉴질랜드의 식품 판매 시장은 슈퍼마켓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소규모의 식료품 가게(현지에서 'dairy'라고 불림), 편의점 등으로 잘 발달되어 있음, 이 중 슈퍼마켓이 전체 식료품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



자료원 : Coriolis Research, 2008년 6월

- 2008년 뉴질랜드의 전체 식료품 판매액은 NZ\$ 246억(US\$ 172억)을 넘어서며 이 중에서 매출의 약 50% 정도인 NZ\$ 127억(US\$ 89억) 정도가 대형 슈퍼마켓을 통해서 유통되었으며 그 뒤를 카페·식당 16%, 소규모 식료품점 8%, 즉석식품 매장 5%, 바·주점 5%, 기타 매장 16%가 잇고 있음
- 또한 뉴질랜드에 수입되는 식품의 유통은 주로 현지 에이전트나 유통회사를 통하는 경우가 80%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수입 식품의 주된 유통 경로는 에이전트를 통한 대형 슈퍼마켓 판매일 것으로 판단됨

- 뉴질랜드에는 Foodstuffs (NZ) Limited와 Progressive Enterprises Limited 두 개의 슈퍼마켓 체인점이 거의 전체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판매의 규모는 2008년 현재 NZ\$ 127억에 이릅니다

〈뉴질랜드 대형 식품 유통 업체 (2009년 현재)〉

유통 그룹	소유형태	점포 브랜드	점포 수	점포 형태
Foodstuffs (NZ) Ltd	뉴질랜드 기업 3개의 독립된 업체의 조합 형태	New World	132	대형 양판점
		Pak'n Save	45	대형 식품 양판점
		Four Square	282	편의점
		On the Spot	147	편의점
		기타	99	주류판매점 등
Progressive Enterprises	Woolworths Limited (호주) 소유	Woolworths	53	대형 양판점
		Foodtown	29	대형 양판점
		Countdown	70	대형 할인점
		Supervalu	39	편의점
		기타	37	신선채소점, 소규모 편의점 등
기타		아시안 식품점 등		

자료원 : New Zealand Retail Food Sector, USDA, 2009년

〈Foodstuffs (NZ) 사의 브랜드 로고〉



〈Progressive Enterprises 사의 브랜드 로고〉



- Foodstuffs (NZ) Limited는 지역별로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뉴질랜드 북섬의 위쪽 반 정도를 담당하는 Foodstuffs (Auckland) Co-operative Society Limited와 웰링턴을 중심으로 북섬의 아래쪽 반을 담당하는 Foodstuffs (Wellington) Co-operative Society Limited, 그리고 남섬 전체를 담당하는 Foodstuffs (South Island)

Co-operative Society Limited, 세 개의 독립된 업체의 조합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매 결정을 각기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유통업체를 통해 식품을 유통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업체와 상담해야 함

- Progressive Enterprises Limited는 모든 구매 결정을 오클랜드에 있는 본부에서 함
- 위의 두 업체 이외에 대형 소비재 할인 판매업체인 The Warehouse가 식품 판매에 관심을 가지면서 유통 다각화를 검토하고 있고 독일계 대형 할인매장업체인 Aldi 사가 호주 시장 진출의 성공에 힘입어 뉴질랜드 시장도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음
- 뉴질랜드에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 대략 80%가 슈퍼마켓 체인점을 통해서 판매되는 것으로 추정됨
- 아시아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최근에는 아시안 식품 유통점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중국계 식품 유통체인으로 Tai Ping, Silver Bell, Tai Wha 등이 있고 한국 교민 사회에서도 Wang, 한양쇼핑, 김스클럽, 에스마트 등이 점차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 식품의 분야별로 전문화된 유통체인점의 성장이 괄목할 만하며 이 중 대표적인 업체로는 육류 판매 프랜차이즈인 Mad Butchers, 제빵제과 프랜차이즈인 Bakers Delight, 과일, 채소 판매점인 Fruit World, Vegie City 등이 있음
- 과일, 채소 판매의 경우 최근 중국계 유통체인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임
- 식음료 납품 도매업체로는 BidVest NZ(BidVest South Africa가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Crean Foodservice에서 상호명을 BidVest NZ으로 변경)와 Foodstuffs가 운영하는 Gilmours(오클랜드), Trents(남섬 지역), Toops(Wellington) 등이 있음

4. 농식품 수출입현황

가. 대 세계 수출입동향	51
나. 한-뉴 교역 규모	62
다. 한국과의 수출입현황	63

4_ 농식품 수출입현황

가. 대 세계 수출입동향

- 뉴질랜드의 농식품 내수시장은 협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지향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음. 2009년 기준 뉴질랜드의 대 세계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16,662백만 미국달러, 수입액은 2,945백만 미국달러로 나타났으며 뉴질랜드는 농림축수산물 교역에서 13,718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뉴질랜드의 농림축수산물 수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축산물로 2009년 기준 뉴질랜드 축산물의 대 세계 수출액은 10,371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8% 감소하였으며, 전체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의 62.2%를 차지하였음
- 반면, 뉴질랜드의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농산물로 2009년 전체 농림축수산물 수입의 7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뉴질랜드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입동향〉

(단위 : US\$천)

구 분		2007	2008	2009
수 출 (A)	농산물	3,559,414	3,794,408	3,584,691
	축산물	11,041,679	12,779,475	10,371,125
	임산물	1,322,119	1,328,955	1,297,984
	수산물	1,525,325	1,562,883	1,408,481
	합 계	17,448,537	19,465,721	16,662,281
수 입 (B)	농산물	2,154,859	2,604,398	2,237,494
	축산물	288,936	300,673	312,893
	임산물	109,519	120,267	90,532
	수산물	315,241	336,348	303,648
	합 계	2,868,555	3,361,686	2,944,567
무역수지(A-B)		14,579,982	16,104,035	13,717,714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Annual Database

주 : 농림축수산물 분류는 뉴질랜드 HS CODE 6단위를 국내 KATI(농수산물무역정보) 기준으로 임의로 분류한 추정치임

1) 부문별/국가별 대 세계 수출입동향

- 뉴질랜드 농산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은 호주이며, 그 뒤를 이어 일본, 미국, 영국 등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의 뉴질랜드의 제 8위의 농산물 수출시장으로 2009년 수출액은 93,763천 달러로 나타났음

〈뉴질랜드의 농산물 국가별 수출동향〉

(단위 : 천불)

순 위	대상국	2008	2009	'09 비중(%)	'09/'08증감(%)
	세 계 전 체	3,794,408	3,584,691	100.00	- 5.53
1	호 주	984,486	1,001,066	27.93	1.68
2	일 본	496,246	415,198	11.58	- 16.33
3	미 국	294,029	321,187	8.96	9.24
4	영 국	287,615	269,800	7.53	- 6.19
5	중 국	155,764	247,665	6.91	59.00
6	E U *	259,984	218,304	6.09	- 16.03
7	대 만	119,988	114,914	3.21	- 4.23
8	한 국	115,553	93,763	2.62	- 18.86
9	네 델 란 드	105,626	92,017	2.57	- 12.88
10	스 페 인	86,368	71,387	1.99	- 17.35
11	말 레 이 시 아	74,293	68,574	1.91	- 7.70
12	홍 콩	45,177	54,581	1.52	20.82
13	캐 나 다	65,794	54,570	1.52	- 17.06
14	싱 가 포 르	64,330	50,598	1.41	- 21.35
15	나 이 지 리 아	54,576	50,280	1.40	- 7.87
16	태 국	60,738	49,930	1.39	- 17.79
17	인 도 네 시 아	61,409	38,505	1.07	- 37.30
18	독 일	45,686	33,650	0.94	- 26.34
19	이 탈 리 아	32,644	27,389	0.76	- 16.10
20	피 지	32,437	26,653	0.74	- 17.83
21	필 리 핀	24,942	20,490	0.57	- 17.85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주 : 농림축수산물 분류는 뉴질랜드 HS CODE 6단위를 국내 KATI(농수산물무역정보) 기준으로 임의로 분류한 추정치임

* EU로 수출되었으나 최종 수출국이 EU의 어느 국가인지 확실치 않은 경우

- 뉴질랜드의 농산물 주요 수입대상국은 호주, 미국, 중국 등임. 특히 호주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 2009년 기준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약 45.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한국의 뉴질랜드의 제29위 농산물 수입국으로 나타났음

〈뉴질랜드의 농산물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 천불)

순 위	구 분	2008	2009	'09 비중(%)	'09/'08증감(%)
	세 계 전 체	2,604,398	2,237,494	100.00	- 14.09
1	호 주	1,100,949	1,009,169	45.10	- 8.34
2	미 국	223,910	208,579	9.32	- 6.85
3	말 레 이 시 아	167,084	87,098	3.89	- 47.87
4	중 국	91,706	81,890	3.66	- 10.70
5	태 국	81,912	70,545	3.15	- 13.88
6	인 도 네 시 아	106,699	50,083	2.24	- 53.06
7	네 덜 란 드	52,911	46,433	2.08	- 12.24
8	필 리 핀	44,673	44,431	1.99	- 0.54
9	이 탈 리 아	48,662	43,369	1.94	- 10.88
10	영 국	46,242	42,122	1.88	- 8.91
11	아 일 랜 드	37,219	39,340	1.76	5.70
12	프 랑 스	55,803	36,432	1.63	- 34.71
13	아 르 헨 티 나	27,952	30,222	1.35	8.12
14	스 와 질 란 드	29,180	28,761	1.29	- 1.44
15	싱 가 포 르	32,976	27,745	1.24	- 15.86
16	독 일	32,605	27,659	1.24	- 15.17
17	캐 나 다	36,798	27,623	1.23	- 24.93
18	인 도	25,386	22,593	1.01	- 11.00
19	브 라 질	47,724	20,124	0.90	- 57.83
20	터 키	19,463	18,110	0.81	- 6.95
29	한 국	13,302	15,253	0.68	14.66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주 : 농림축수산물 분류는 뉴질랜드 HS CODE 6단위를 국내 KATI(농수산물무역정보) 기준으로 임의로 분류한 추정치임

-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 부문인 축산물의 수출은 2009년 기준 10,371백만 달러 규모로 나타났다. 2008년까지만 해도 뉴질랜드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은 미국이었으나 2009년에 들어서 중국 시장이 커져 2008년 대비 34.84% 증가하였음

〈뉴질랜드의 축산물 국가별 수출동향〉

(단위 : 천불)

순 위	구 분	2008	2009	'09 비중(%)	'09/'08 증감(%)
	세 계 전 체	12,779,475	10,371,125	100.00	- 18.85
1	중 국	939,267	1,266,531	12.21	34.84
2	미 국	1,539,158	1,242,845	11.98	- 19.25
3	영 국	629,148	578,103	5.57	- 8.11
4	일 본	732,642	515,083	4.97	- 29.70
5	호 주	518,712	423,076	4.08	- 18.44
6	인 도 네 시 아	517,131	375,441	3.62	- 27.40
7	독 일	500,371	341,421	3.29	- 31.77
8	말 레 이 시 아	449,368	297,333	2.87	- 33.83
9	필 리 핀	430,973	296,999	2.86	- 31.09
10	대 만	324,002	294,497	2.84	- 9.11
11	벨 기 에	283,304	263,955	2.55	- 6.83
12	사우디 아라비아	451,955	256,585	2.47	- 43.23
13	베 네 주 엘 라	466,210	224,857	2.17	- 51.77
14	멕 시 코	294,927	215,993	2.08	- 26.76
15	한 국	344,342	213,564	2.06	- 37.98
16	싱 가 포 르	273,828	212,732	2.05	- 22.31
17	프 랑 스	222,954	195,197	1.88	- 12.45
18	캐 나 다	220,825	189,337	1.83	- 14.26
19	태 국	285,478	173,718	1.68	- 39.15
20	U A E	116,383	171,319	1.65	47.20
21	홍 콩	140,685	158,102	1.52	12.38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주 : 농림축수산물 분류는 뉴질랜드 HS CODE 6단위를 국내 KATI(농수산물무역정보) 기준으로 임의로 분류한 추정치임

- 반면, 뉴질랜드의 축산물 수입 규모는 크지 않는 편임. 축산물 수입의 약 48%는 이웃국가인 호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 그 외 미국, 캐나다 등의 미주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량이 큰 편임

〈뉴질랜드의 축산물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 천불)

순 위	구 분	2008	2009	'09 비중(%)	'09/'08 증감(%)
	세 계 전 체	300,673	312,893	100.00	4.06
1	호 주	164,124	148,840	47.57	- 9.31
2	뉴 질 랜 드	22,067	41,788	13.36	89.37
3	미 국	31,707	30,290	9.68	- 4.47
4	캐 나 다	20,219	26,496	8.47	31.04
5	핀 란 드	12,839	16,329	5.22	27.18
6	텐 마 크	3,701	7,422	2.37	100.53
7	프 랑 스	8,434	7,186	2.30	- 14.79
8	영 국	4,687	5,955	1.90	27.05
9	태 국	3,329	4,036	1.29	21.24
10	브 라 질	4,028	2,730	0.87	- 32.23
11	아 이슬 란 드	1,842	2,540	0.81	37.90
12	중 국	1,884	2,495	0.80	32.47
13	네 델 란 드	3,381	2,066	0.66	- 38.89
14	이 탈 리 아	1,734	1,778	0.57	2.58
15	싱 가 포 르	1,958	1,725	0.55	- 11.92
16	스 웨 덴	685	1,364	0.44	99.27
17	독 일	1,623	1,320	0.42	- 18.63
18	인 도	1,203	1,032	0.33	- 14.15
19	피 지	1,340	953	0.30	- 28.89
20	인 도 네 시 아	1,286	773	0.25	- 39.85
21	아 일 랜 드	1,987	697	0.22	- 64.92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주 : 농림축수산물 분류는 뉴질랜드 HS CODE 6단위를 국내 KATI(농수산물무역정보) 기준으로 임의로 분류한 추정치임

* 2위 뉴질랜드의 수입은 수출이후 반송된 것으로 추정

- 뉴질랜드는 2009년 기준 1,298백만 불 규모의 임산물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에 비해 약 2%가 감소한 수치임. 중국은 뉴질랜드 임산물 제1위의 수출대상국으로 전체 임산물 수출의 33.1%를 차지하고 있음. 이어 호주가 14.5%, 한국이 1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뉴질랜드의 임산물 국가별 수출동향〉

(단위 : 천불)

순 위	구 분	2008	2009	'09 비중(%)	'09/'08 증감(%)
	세 계 전 체	1,328,955	1,297,984	100.00	- 2.33
1	중 국	220,496	429,681	33.10	94.87
2	호 주	234,611	188,485	14.52	- 19.66
3	한 국	228,011	183,520	14.14	- 19.51
4	미 국	149,785	124,266	9.57	- 17.04
5	일 본	189,740	117,634	9.06	- 38.00
6	인 도	48,293	58,473	4.50	21.08
7	베 트 남	33,837	40,401	3.11	19.40
8	대 만	25,450	19,932	1.54	- 21.68
9	아랍 에미리트	41,409	18,354	1.41	- 55.68
10	필 리 핀	22,453	17,748	1.37	- 20.95
11	인 도 네 시 아	16,821	16,437	1.27	- 2.28
12	태 국	17,738	13,041	1.00	- 26.48
13	뉴 칼 레 도 니 아	7,004	9,533	0.73	36.12
14	사우디 아라비아	29,896	8,053	0.62	- 73.06
15	서 사 모 아	5,714	5,709	0.44	- 0.08
16	말 레 이 시 아	8,714	5,399	0.42	- 38.04
17	스 페 인	3,215	3,696	0.28	14.98
18	남 아 프 리 카	2,156	3,612	0.28	67.49
19	네 털 란 드	4,742	3,412	0.26	- 28.05
20	프 랑 스 령 폴 리 네 시 아	4,467	3,252	0.25	- 27.21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주 : 농림축수산물 분류는 뉴질랜드 HS CODE 6단위를 국내 KATI(농수산물무역정보) 기준으로 임의로 분류한 추정치임

- 뉴질랜드의 임산물 수입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9년 기준 임산물 수입액은 약 9천만 불 수준이며, 호주, 프랑스, 캐나다, 중국이 주요 수입시장임. 이들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59%를 차지하고 있음

〈뉴질랜드의 임산물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 천불)

순 위	구 분	2008	2009	'09 비중(%)	'09/'08 증감(%)
	세 계 전 체	120,267	90,532	100.00	- 24.72
1	호 주	20,273	16,489	18.21	- 18.67
2	프 랑 스	17,370	15,168	16.75	- 12.68
3	캐 나 다	21,817	11,743	12.97	- 46.17
4	중 국	11,500	9,958	11.00	- 13.41
5	미 국	16,140	7,439	8.22	- 53.91
6	인도네시아	5,841	5,718	6.32	- 2.10
7	페 루	1,750	3,861	4.26	120.59
8	태 국	2,314	2,092	2.31	- 9.61
9	말레이시아	2,220	2,041	2.25	- 8.07
10	솔로몬 제도	1,505	1,904	2.10	26.50
11	아르헨티나	1,377	1,462	1.61	6.17
12	이탈리아	2,572	1,356	1.50	- 47.28
13	피 지	1,087	876	0.97	- 19.45
14	칠 레	2,196	808	0.89	- 63.20
15	뉴 질 랜 드	264	798	0.88	202.50
16	독 일	803	771	0.85	- 4.03
17	헝 가 리	595	762	0.84	28.05
18	파푸아뉴기니	1,773	733	0.81	- 58.64
19	영 국	467	690	0.76	47.62
20	가 이 아 나	707	466	0.51	- 34.05
21	인 도	600	453	0.50	- 24.49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주 : 농림축수산물 분류는 뉴질랜드 HS CODE 6단위를 국내 KATI(농수산물무역정보) 기준으로 임의로 분류한 추정치임

- 뉴질랜드의 수산물 수출액은 2009년 기준 1,408백만 불로 전년 대비 9.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수산물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호주, 미국, 홍콩, 일본 등임. 한국은 뉴질랜드의 제 7위의 수산물 수출대상국으로 2009년 기준 56,492 천불이 수출되었고 전체 수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의 수산물 국가별 수출동향〉

(단위 : 천불)

순 위	구 분	2008	2009	'09 비중(%)	'09/'08 증감(%)
	세 계 전 체	1,562,883	1,408,481	100.00	- 9.88
1	호 주	303,364	298,986	21.23	- 1.44
2	미 국	189,615	178,057	12.64	- 6.10
3	홍 콩	170,237	165,922	11.78	- 2.53
4	일 본	155,114	138,926	9.86	- 10.44
5	중 국	128,721	127,493	9.05	- 0.95
6	독 일	101,789	76,845	5.46	- 24.51
7	한 국	57,662	56,492	4.01	- 2.03
8	스 페 인	49,297	38,079	2.70	- 22.76
9	프 랑 스	36,984	31,238	2.22	- 15.54
10	싱 가 포 르	20,896	29,947	2.13	43.31
11	벨 기 에	36,366	24,574	1.74	- 32.43
12	영 국	24,504	21,150	1.50	- 13.69
13	네 델 란 드	24,585	16,734	1.19	- 31.93
14	캐 나 다	26,585	14,500	1.03	- 45.46
15	남아프리카	15,357	13,664	0.97	- 11.03
16	스 위 스	16,376	12,143	0.86	- 25.85
17	스 웨 덴	18,534	10,483	0.74	- 43.44
18	이 탈 리 아	13,752	10,470	0.74	- 23.87
19	대 만	10,405	10,448	0.74	0.41
20	그 리 스	7,126	10,425	0.74	46.29
21	말 레 이 시 아	12,548	10,166	0.72	- 18.98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주 : 농림축수산물 분류는 뉴질랜드 HS CODE 6단위를 국내 KATI(농수산물무역정보) 기준으로 임의로 분류한 추정치임

- 뉴질랜드의 주요 수산물 수입 대상국은 호주, 태국, 미국, 아일랜드로 나타났다.
한국은 뉴질랜드의 제19위의 수산물 수입대상국으로 2009년 기준 2,057천불이 수입되어 전체 수산물 수입의 0.68%를 차지함

〈뉴질랜드의 수산물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 천불)

순 위	구 분	2008	2009	'09 비중(%)	'09/'08 증감(%)
	세 계 전 체	336,348	303,648	100.00	- 9.72
1	호 주	79,933	68,143	22.44	- 14.75
2	태 국	42,392	38,736	12.76	- 8.62
3	미 국	34,441	33,375	10.99	- 3.10
4	아 일 랜 드	30,162	32,260	10.62	6.96
5	스 와 질 란 드	28,720	28,139	9.27	- 2.02
6	중 국	26,861	18,150	5.98	- 32.43
7	네 델 란 드	8,698	9,155	3.02	5.26
8	베 트 남	7,714	7,499	2.47	- 2.79
9	캐 나 다	12,251	7,387	2.43	- 39.70
10	영 국	4,461	5,804	1.91	30.12
11	아 르헨티나	2,464	5,025	1.66	103.95
12	뉴 질 랜 드	1,338	4,831	1.59	261.23
13	일 본	5,940	4,556	1.50	- 23.30
14	독 일	6,060	4,489	1.48	- 25.92
15	인 도 네 시 아	4,048	4,005	1.32	- 1.08
16	싱 가 포 르	5,391	3,772	1.24	- 30.03
17	말 레 이 시 아	2,784	3,417	1.13	22.72
18	인 도	3,018	2,277	0.75	- 24.58
19	한 국	2,625	2,057	0.68	- 21.62
20	스 위 스	1,668	1,975	0.65	18.43
21	칠 레	2,062	1,851	0.61	- 10.23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주 : 농림축수산물 분류는 뉴질랜드 HS CODE 6단위를 국내 KATI(농수산물무역정보) 기준으로 임의로 분류한 추정치임

2) 품목별 수입현황

- 주요 수입농산물은 기타 조제식료품, 사탕수수당, 밀과 메슬린 등 생산이 부족한 품목과 뉴질랜드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류 등을 수입하고 있음. 특히 기타 조제 식료품은 전체 농산물 수입금액의 약 8.34%를 차지하는 주수입 품목으로 호주와 아일랜드로부터의 수입이 각기 25.4%, 17.2%를 차지함
- 이와 함께 개/고양이 사료, 포도주, 바나나, 라면 등도 주요 수입대상 품목임.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2009)〉

순위	품 목	수입액	주수입대상국별 비중(%)	수입비중	비 고
	농산물 전체	2,237 백만불	호주(45.1) 미국(9.3) 말레이시아(3.9) 중국(3.7) 태국(3.2) 인도네시아(2.2)	100%	한국29위(0.68)
1	기타 조제식료품	187	호주(25.4) 아일랜드(17.2) 스위스(15.1) 미국(14.6) 네덜란드(4.8)	8.34	한국23위(0.3)
2	사탕수수당	80	호주(99.6) 말레이시아(0.2)	3.56	
3	밀과 메슬린	73	호주(99.5) 캐나다(0.5)	3.24	
4	개/고양이 사료	69	미국(41.2) 호주(39.6) 태국(6.1) 프랑스(6)	3.10	
5	포도주	61	호주(75.1) 프랑스(10.3) 아프리카(4.8)	2.75	
6	베이커리제품	53	호주(66.7) 중국(9.2) 피지(4.5)	2.38	한국9위(1.78)
7	바나나	48	필리핀(68.2) 에콰도르(30.8)	2.15	
8	스위트 비스킷	46	호주(80.4) 피지(6.2) 중국(2)	2.04	한국7위(0.99)
9	초콜릿	45	호주(55.8) 벨기에(8.6) 이탈리아(5.2)	2.03	
10	팜넛 오일케이크	45	인도네시아(57.5) 말레이시아(42.4)	2.03	

순위	품 목	수입액	주수입대상국별 비중(%)	수입비중	비 고
12	설탕과자 (기타)	43	호주(48.3) 중국(17.4) 태국(8) 스페인(3.4)	1.91	한국23위(0.35)
13	정미	41	태국(36.7) 호주(21.9) 미국(18) 파키스탄(7.1) 인도(7) 베트남(2.4) 중국(1.5)	1.82	한국8위(1.45)
14	기타 소스 (장류 등)	41	호주(46.3) 캐나다(11.2) 태국(11) 미국(8.5)	1.82	한국12위(0.92)
15	라면	37	호주(40.1) 태국(16.1) 인도네시아(10.5)	1.65	한국4위(8.41)
19	퀵런(담배)	32	호주(90.6) 독일(2.6) 중국(2.4) 싱가포르(1.6)	1.45	한국7위(0.31)
23	과즙음료	28	호주(82.6) 미국(4.8) 한국(3.8)	1.27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3) 국가별 수입동향

- 국가별로는 최대 수입품목인 기타조제식료품, 사탕수수당의 주 수입원인 호주가 제1위의 수입대상국으로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45.1%를 차지하며 그 뒤를 미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이 잇고 있고 한국은 제29위의 수입대상국으로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8%로 미미한 수준임

〈국별 농산물 수입규모 및 주요 수입품목(2009)〉

순위	국가	수입규모	주 수입품목 및 수입액(백만불)	수입비중
	농산물 전체	2,237		100%
1	호 주	1,009	사탕수수당(79) 메슬린(72) 기타 조제식료품(47) 포도주(46)	45.1
2	미 국	209	개/고양이 사료(29) 기타 조제식료품(27) 위스키류(17) 포도(12)	9.32
3	말레이시아	87	팜넛 오일케이크(19) 기타 팜유와 분획물(16) 정제한 유채유(8) 코코아버터(8)	3.89
4	중 국	82	설탕과자(기타)(7) 피넛버터(7) 베이커리제품(5) 기타 냉동채소(5)	3.66
5	태 국	71	정미(15) 기타 자당(6) 라면(6) 기타 소스(장류 등)(4)	3.15
6	인도네시아	50	팜넛 오일케이크(26) 라면(4) 기타 조제식료품(3) 홍차(3)	2.24
7	네덜란드	46	기타 조제식료품(9) 인스턴트커피(8) 채소종자(4) 인경 괴경 구경(4)	2.08
8	필리핀	44	바나나(33) 파인애플(5) 건조 코코넛(1) 기타 잼 과실젤리 마말레이드(1)	1.99
9	이탈리아	43	토마토(조제)(9) 올리브유(4) 발포성 포도주(3) 초콜릿(2)	1.94
10	영 국	42	위스키류(12) 기타 조제식료품(5) 진 및 제네바(3) 찌거나 삶은 쌀(3)	1.88
29	한 국	15	인스턴트커피 조제품(3.5) 라면(3.1) 과즙음료(1.1) 베이커리제품(0.9)	0.68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나. 한-뉴 교역 규모

- 2003년 US\$ 11억에 불과하던 양국 교역 규모가 2008년 에는 US\$ 19억에 이르렀음. 2009년에는 세계경기 위축으로 US\$ 17억 7700만 달러 감소했으나, 2010년 양국간 교역 규모는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아래 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매년 2~4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아왔으나, 2009년에는 소폭 흑자로 반전되었음을 볼 수 있음. 그러나, 양국간 교역은 우리가 농수축임산물을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역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음

〈양국 간 교역 규모 변동 현황〉

(단위 : US\$ 백만)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뉴 수출	620	670	673	699	825	891
대뉴 수입	879	891	967	1,171	1,122	879
교역 규모	1,499	1,561	1,640	1,870	1,947	1,770

자료 : 한국무역통계

다. 한국과의 수출입현황

- 한국의 대 뉴질랜드 농림수산물 수출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로 '09년에는 약 90백만 달러를 수출하였음
 - 부류별로는 농산물 16백만 달러, 수산물 70백만 달러, 축산물 4백만 달러, 임산물 10만 달러로 '08년 대비 증감을 보면 수산물의 수출이 금액 기준 16.2% 증가하여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 주요 품목별로는 민대구, 오징어, 새꼬리민태의 수출 규모가 가장 크며 이들 3개 품목이 전체 농림수산물 수출액의 43.6%를 차지하고 있음

〈대 뉴질랜드 농림수산물 수출현황〉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08년		2009년		대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38,423	78,319	48,106	90,174	25.2	15.1
농산물	5,731	14,338	7,241	15,620	26.3	8.9
수산물	31,912	60,612	39,995	70,461	25.3	16.2
축산물	758	3,309	844	3,998	11.4	20.8
임산물	23	60	26	95	13.8	58.2
민대구	2,101	11,182	3,803	15,406	81	37.8
오징어	10,727	7,986	12,684	12,173	18.2	52.4
새꼬리민태	5,382	10,948	6,855	11,751	27.4	7.3
돔	2,877	8,351	3,575	10,195	24.3	22.1
젤라틴	543	2,686	733	3,898	35.2	45.1
커피류	407	3,004	561	3,231	37.9	7.6
밀크대용물 함유조제품	377	2,913	520	3,115	38	6.9
라면	588	2,061	829	2,492	41.2	20.9
참치	332	2,222	476	2,288	43.6	2.9
전갱이	712	803	855	1,263	20.1	57.4
쌀	3	13	612	1,042	19021.3	7893.3
김치	274	719	418	946	52.8	31.6
소오스류	587	1,096	556	861	-5.4	-21.4
음료	985	851	950	724	-3.6	-14.9
비스킷	138	686	164	707	18.8	3.2
상어	136	196	341	690	151.3	251.6
베이커리 제품	115	710	169	605	47.2	-14.8
국수	368	588	386	533	5	-9.4
주류	485	557	583	510	20.1	-8.4
조제하지 않은 파스타	125	568	103	497	-18.3	-12.6
김	105	344	181	472	71.8	37.1
삼치	33	41	443	346	1249.7	750.5
밀	67	101	172	306	155.7	202.1
인스턴트면	27	107	98	278	259.9	160.8
소주	209	275	217	277	4.1	0.7
배	155	279	179	275	15.4	-1.3
아이스크림	117	312	99	275	-15.8	-12
아귀(냉동)	147	355	105	252	-28.5	-28.9
간장	263	261	266	242	0.9	-7.2
고추장	40	81	100	209	152	157
과즙음료	225	227	221	178	-1.8	-21.3
어란	94	512	65	171	-30.9	-66.7

자료 : KATI

- 한국의 대 뉴질랜드 농림수산물 수입규모는 매년 감소 추세로 '09년에는 약 659백만 달러를 수입하였음
 - 부류별로는 농산물 90백만 달러, 수산물 18백만 달러, 축산물 232백만 달러, 임산물 319백만 달러로 '08년 대비 농산물의 수입이 금액 기준 4% 감소한 수치임
- 주요 품목별로는 포유가축육류, 낙농품, 과실류의 수입 규모가 가장 크며 이들 3개 품목이 전체 농림수산물 수입액의 33.5%를 차지하고 있음

〈대 뉴질랜드 농림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08년		2009년		대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2,796,691	863,612	2,592,360	658,897	-7.3	-23.7
농산물	54,051	93,320	50,730	89,588	-6.1	-4.0
수산물	3,814	16,439	7,595	18,047	99.1	9.8
축산물	79,872	361,240	80,191	231,799	0.4	-35.8
임산물	2,658,954	392,613	2,453,845	319,463	-7.7	-18.6
포유 가축 육류	43,813	159,496	37,020	91,149	-15.5	-42.9
낙농품	22,101	104,444	24,307	77,275	10.0	-26.0
과실류	28,634	59,715	24,157	52,472	-15.6	-12.1
기타 축산물 부산물	6,194	27,584	7,753	19,312	25.2	-30.0
단백질류	2,908	38,169	2,429	18,751	-16.5	-50.9
기타 육류	3,662	18,403	3,624	12,310	-1.1	-33.1
채소류	17,460	15,363	16,178	11,700	-7.4	-23.8
연체동물	2,759	11,592	2,406	9,713	-12.8	-16.2
기타조제 농산품	255	1,261	336	8,909	32.0	606.3
한약재(축산물)	189	12,138	182	8,570	-4.0	-29.4
주류	3,134	5,458	2,577	5,010	-17.8	-8.2
코코아류	1,246	6,133	1,097	4,825	-12.0	-21.3

구 분	2008년		2009년		대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어류	453	2,275	904	4,081	99.3	79.4
동물성 유지	1,005	983	4,864	3,877	384.2	294.6
소오스류	1,520	2,652	1,423	2,273	-6.4	-14.3
수산부산물	477	2,088	577	2,168	21.0	3.8
유지가공품	981	911	1,987	1,490	102.5	63.5
기타 수산물	92	69	3,652	1,074	3,856.9	1,446.3
비식용 수산물	31	322	53	975	71.1	202.8
곡류	0	0	1,874	674	93,677,350.0	429,445.2
포유가축류	0	2	11	516	21,351.0	26,311.7
사료	379	381	436	489	14.9	28.4
서류	234	246	380	393	62.7	59.6
화훼류	9	270	23	249	148.6	-7.6

자료원 : KATI

5. 수출입 통관제도

가. 수입식품관련 제도	69
나. 수출입관련 제도	94
다. FTA 체결 및 추진현황	97

5_ 수출입 통관제도

가. 수입식품관련 제도

- 뉴질랜드의 경우 수입허가나 수입면허 제도는 없으나 검역제도가 엄격하고 까다로움

■ 주요 법규

- 뉴질랜드에서는 수입식품의 안전 보장을 위해 다수의 법과 규정 및 국제협약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들이 이러한 법규 및 협약을 집행하는 데 관여하고 있음. 이 중 주요 법과 국제협약은 다음과 같음
 - 1981년의 식품법(Food Act) 및 2002년 뉴질랜드식품기준(New Zealand Food Standards 2002)과 비상 식품기준(Emergency Food Standards)을 포함하는 위임법
 - 호주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가 공동 식품기준 시스템에 참여하는 공동식품기준조약 (Joint Food Standards Treaty)
 - 1997년의 농업용화합물 및 수의약품법(Agricultural Compounds and Veterinary Medicines Act)
 - 뉴질랜드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지거나 수입된 제품이 호주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허용하는 트랜스 태즈먼 상호인정법(Trans Tasman Mutual Recognition Act). (각국의 고위험 식품 목록을 포함한 일부 제품들은 현재 이 협약에서 면제되고 있음)
 - 위생 및 식물검역 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Agreement)과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
 - 식품기준을 설정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 수입식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은 1981년의 식품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에는 수입식품 기준의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개의 조항이 있음. 하나는 식품

안전장관(Minister of Food Safety)으로 하여금 처방식품기준(Prescribed Food Standards)과 비상 식품기준(Emergency Food Standards)을 비롯한 각종 기준을 발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식품기준협정(Joint Food Standards Agreement)을 발효시키는 조항임. 식품법은 모든 식품이 해당 식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뉴질랜드 (처방식품) 기준(New Zealand (Prescribed Foods) Standard) : 식품이 고위험 식품(high-risk food)으로 결정되는 경우 식품안전장관은 그것을 처방식품(Prescribed Food)으로 지정하고 이 음식이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지 감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
 - 비상 식품 기준(Emergency Food Standard) : 식품의 안전문제가 충분히 심각한 경우 식품안전장관은 사망 또는 중상의 위험을 완화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식품 기준을 발표할 수 있음
 - 공동식품 기준(Joint Food Standard) : 뉴질랜드에서 주로 식품의 구성 및 라벨 표시와 관련이 있는 공동식품 기준규범(Joint Food Standards Code) 안에 기준이 포함 되어 있음
- 현재의 수입식품제도는 처방식품이나 고위험 식품에 초점을 두고 있음. 현재의 고위험 식품목록은 1996년에 제정되었으며 식품법에 의하면 오직 처방식품 또는 비상 식품 기준의 적용을 받는 식품만 국경에서 감시(검사, 표본추출, 시험)할 수 있음. 그 결과 대부분의 식품은 ‘저위험(low-risk)’으로 간주되면서 제약을 받지 않고 수입되고 있으며 ‘저위험’ 식품에 대한 감시는 제한적으로 실시됨
- 뉴질랜드 정부는 수입식품제도를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음. 미래의 제도는 뉴질랜드에 자국산 식품을 수출하는 나라들에게 식품안전을 관리해야 할 책임을 더 많이 부과시키는 것으로 수입식품의 안전과 지속성을 관리하기 위해 뉴질랜드 국경에서 통제(즉, 독립적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시험하는 것)하는 데 주로 의존하던 방식에서 뉴질랜드의 국내산 식품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그 기준과 같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외에서 실시하는 통제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음

■ 호주-뉴질랜드 공동식품기준규범

- 호주와 뉴질랜드는 1995년 12월 무역을 촉진하면서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식품기준규범(joint food standards system)을 개발하기 위한 취지의 협정을 체결하였음. 이 협정으로 호주-뉴질랜드 식품 규제기관인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이 설립되고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규범(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이하 본 규범)이 개발됨. 본 규범은 2001년 2월 뉴질랜드에서 채택되었고 2002년 12월에 완전히 발효되었음
- FSANZ에 의해 집행되는 본 규범은 식품의 구성, 첨가물, 라벨 표시, 오염물, 그리고 유전자 변형 등을 포함한 식품 보호와 관련된 요건을 담고 있음. 본 규범은 일반 식품기준, 상품기준, 식품안전기준(호주에만 해당), 그리고 1차적 제품 및 가공 기준 등 4개의 장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일반 식품기준과 상품기준에 관한 장만 뉴질랜드에 적용됨. 뉴질랜드에서 본 규범에 포함된 기준은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ew Zealand Food Safety Authority: NZFSA)에 의해 집행됨
- 몇몇의 분야는 공동식품기준 시스템의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뉴질랜드 식품기준(New Zealand Food Standards) 하에서 적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가 있음
 - 식품 내 농약 최대 잔류한도
 - 식품위생 및 식품안전에 관한 조항(고위험 수입식품 포함)
 - 제3 국 무역과 관련된 수출 요구조건
 - 다이어트 보조식품

■ 주요 관련 기관

- 식품공급을 규제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는 뉴질랜드 기관들은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A),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그리고 뉴질랜드 농림부(MAF) 소속인 뉴질랜드 생물방역국(Biosecurity New Zealand)가 있음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A)〉

-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A)은 뉴질랜드의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2002년 농림부(MAF) 소속의 준자치단체로 설립되었고 2007년 7월 독립적인 정부부서가 되었음
- 관계당국으로서 NZFSA의 주요 책임은 공중보건을 보호 및 촉진하고 식품 및 식품 관련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식품 중 거의 80%가 수출되어 뉴질랜드의 수출소득의 절반 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후자는 중요한 책임임. 뉴질랜드는 종종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식품 거래를 위한 표준 설정 기관) 및 OIE(동물 건강을 위한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 표준 설정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함
- NZFSA는 다음 항목들을 망라하는 입법을 집행함
 -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식품
 - (살아있는 동물과 생식세포질을 제외한) 1999년의 동물제품법(Animal Product Act)
 - 1997년의 농업용화합물 및 수의약품법(Agricultural Compounds and Veterinary Medicines Act)
 - 2004년의 포도주법(Wine Act)
- NZFSA가 착수한 한 가지 의미 있는 조치는 국내식품검토(Domestic Food Review) 프로그램임. 그것은 수십 년간 시행되어 온 뉴질랜드의 규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착수되었으며 동 프로그램은 다른 무엇보다도 식품 산업이 전국적으로 규제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공정한 사항들을 해결하고 (NZFSA, 공공보건소, 지방의회 등) 규제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보고된 식품매개 질환의 수의 지속적인 증가를 저지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검사관에게 식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부과하는 대신에 식품의 안전과 적절성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미리 대처하는 자세를 갖고 식품의 안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증명해야 하는 식품 운영 담당자에게 책임이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이렇게 하면 뉴질랜드 관행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과 보조를 맞추게 될

것임. 뉴질랜드 정부는 2006년 10월 신규 입법을 위해 초안이 작성되고 있는 건의안을 승인함. 이 건의안은 과도기를 거친 후 2014년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임

- NZFSA는 국내식품검토제도와 더불어 2004년에 완료된 수입식품검토(Imported Food Review)의 결과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수입식품 검토의 대상은 수입되는 모든 식품과 음료, (비료와 동물사료를 포함한) 농업용 화합물, 수의약품, 애완동물용 식품이 포함됨. 이 새 제도 하에 뉴질랜드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1차적인 방법으로 검사와 시험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해외에서 시행되는 통제 시스템들이 뉴질랜드의 국내식품을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그와 동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 통제 시스템들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 새 제도는 식품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수입업자들에 더 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수출국의 시스템과 보증이 뉴질랜드의 국내식품을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그와 동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 시스템과 보증을 인정하고 있음. 뉴질랜드의 목적은 식품을 생산하고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국가들에게 식품의 안전을 관리해야 할 책임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이 제도의 시행은 각 기관 사이에서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며 이 새 제도는 수출국의 관계당국이 수입국을 위한 ‘위기관리자’의 역할을 하도록 효과적으로 공식화하고 있음
- 고위험도 식품에 대한 기준은 최종 마무리되고 있는 중이나 쌍각 조개류(bivalve molluscan shellfish)와 BSE 여부에 따른 쇠고기(beef for BSE) 그리고 로크포르 및 원유 초경성 치즈(roquefort and raw milk extra hard grating cheese) 등의 세 가지 식품은 위험을 원산지에서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신규 수입제도 모델에 기초하여 기존 식품법(Food Act) 하에서 이미 발표되었음
- 이 제도의 시행의 일환으로 수입과 관련하여 기존 식품법 하에서 두 가지 새로운 기준이 제안되었으며 이 기준들은 현재 협의를 위한 안건으로 나와 있음(www.nzfsa.govt.nz/consultation 참조). 하나는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A)이 수입업자들에게 그들이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식품이 인간이 소비하기에 안전하고 적절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하도록 기대하는지 분명히 알려주는 데 취지를 두고 있으며 다른 제안 기준은 수입업자들에게 그들의 회사 상호와 물리적 주소, 연락 담당자의 이름과 우편주소 등과 같은 세부사항들을 NZFSA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기준의 요건에 의하면 수입업자들은 그들이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제품이 뉴질랜드의 모든 준거규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보여주는 기록과 그들의 식품이 안전하게 생산, 운송 및 저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 구매 기록 그리고 관련 공급자 정보를 보관하거나 그에 접근할 수 있으면 NZFSA는 연락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그것은 데이터베이스가 NZFSA로 하여금 모든 식품 수입업자들과 보다 효율적으로 통신하여 이들 수입업자들이 미래의 수입식품 제도에 대비하도록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음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 1991년의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하에서 법정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은 2002년에 설립되었음. 동 기관의 주요 설립 목적은 공공보건 및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것,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근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오도 적이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예방하는 것임. FSANZ는 그러한 만큼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내용과 라벨 표시를 규율하는 식품기준을 설정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 기준의 적용 범위에는 미생물의 한도를 포함하여 식품의 구성과 라벨 표시 그리고 오염물질이 포함되고 뉴질랜드에서는 NZFSA가 이 기준을 집행하고 있음
-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FSANZ에 의해 개발된 한 기준을 통과시킴. 이 기준은 빵에 엽산(folic acid)성분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적인 강화는 대상인구(16-44세의 여성)의 엽산 섭취량을 하루 평균 140마이크로그램 증가시키고 신경관 결손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임신의 건수를 줄일 것으로 예상됨. 빵 제조업자들에게는 빵에 엽산을 첨가하기 시작하는 데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며 뉴질랜드에서는 2009년 9월부터 대부분의 빵이 엽산을 함유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함. 강화된 빵은 빵 100g(식빵 2-3장)에 약 135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함유. 유기농 빵은 엽산 강화 의무로부터 면제됨. 이로써 소비자 들에게는 미강화 빵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짐

- 2008년 3월에는 FSANZ에 의해 개발된 기준이 뉴질랜드 관보에 공시되었는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빵에서 비요오드화 소금(non-iodized salt)을 요오드화 소금(iodized salt)으로 교체해야 하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FSANZ는 뉴질랜드에서 요오드 결핍 인구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적 교체를 승인하였음. 또한 FSANZ는 빵을 우선적 식품 대체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빵이 전체 인구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섭취되기 때문이며 모든 유기농 빵은 엽산 강화 의무 기준에 따라 요오드 강화 의무로부터 면제될 것임
- FSANZ 위원회는 2008년 3월 영양, 건강 및 관련 주장에 관한 식품기준 초안을 승인하였음. 이 기준은 2008년 4월 호주-뉴질랜드 식품규제각료회의(Australia New Zealand Food Regulation Ministerial Council)에 통지되었으며 이 기준에 의하면 영양소 및 생물학적 활성성분에 관한 건강주장(health claims)은 전반적인 영양소 프로필(nutrient profile)에 근거하여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식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음. 영양소 프로필은 FSANZ에 의해 개발된 영양소 프로필 채점기준 (Nutrient Profile Scoring Criteria: NPSC)에 의해 결정되며, NPSC는 에너지, 포화지방, 설탕, 나트륨, 단백질, 과일, 채소, 견과 및 콩 함유량을 고려해야 함

〈뉴질랜드 생물방역국(Biosecurity New Zealand)〉

- 뉴질랜드 생물방역국(Biosecurity New Zealand)은 생물안전성 보호(예 :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원치 않는 해충과 질병 예방하고 만약 뉴질랜드로 도착하는 경우 통제, 관리 또는 제거하는 것)가 주된 역할인 뉴질랜드 농림부(MAF)의 소속 기관임. 뉴질랜드 생물방역국과 농림부 검역국(MAF Quarantine Services)은 2007년에 합병되어 지금은 뉴질랜드 농림부 생물방역국(MAF Biosecurity New Zealand)으로 약 1,2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중 900명이 생물방역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들 900명의 직원들 중 약 550명은 국경 보안/보호 업무에 관계하고 있음. 뉴질랜드는 엄격한 생물방역 규칙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가공 제품은 수입건강기준(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뉴질랜드로 수입될 수 없으며 수입건강기준은 무역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생물방역 요구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 뉴질랜드 생물방역국은 2006년 7월 1일 생물방역 수입건강기준(biosecurity import health standards)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금조달을 위한 새 시스템을 도입. 뉴질랜드 생물방역국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역국과 민간부문 신청자들로부터 접수한 수입건강기준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회계연도를 위한 업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 수입건강기준을 개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음
 - MAF는 매년 12월 경에 다음 7월에 시작하는 1년 동안의 수입건강기준 작업에 대한 신청 및 요청 재확인을 모집하고 아울러 신청자가 그 작업을 위한 자금을 기꺼이 조달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의사표시를 함께 접수해야 함
 - MAF는 다가오는 1년 동안의 수입건강기준 작업에 대한 모든 ‘유효한’ 요청들의 목록을 편집해야 함
 - MAF 관리들은 우선순위 기준을 이용하여 그 요청들을 사전 심사하고 사전심사는 그 1년 동안 진행하기에 충분히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을 요청들을 확인해야 함. 우선순위 기준은 뉴질랜드 정부의 목표와의 전략적 부합성, 뉴질랜드를 위한 순이익, 작업의 기술적 어려움, 뉴질랜드 사람들을 위한 결과 수용 가능성, 그리고 적절한 자원의 가용성 등이 있음
 - 그리고 나서 MAF와 다른 정부부서들 그리고 경험 있는 독립적 개인들을 포함하는 한 전문가 패널이 동일한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하여 나머지 수입건강기준 요청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함
 - 일단 MAF가 우선순위가 부여된 요청목록을 완성하면 뉴질랜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Crown-funded) 자원을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항목에 맞추어 작업 프로그램의 정부 자금 지원(Crown-funded) 부분을 형성.

- 그 후 신청 건에 대해 자금을 조달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의사를 표시한 나머지 신청자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그리고 적절한 계약상의 자원이나 직원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들의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고려하도록 초청됨
 - 그리고 나서 연간 수입건강기준 개발 작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Crown-funded) 자원과 민간자금이 투입된 자원 모두를 포함하면서 최종적으로 완성됨
 - 그러면 신청자들은 신청 결과와 모든 요청들의 우선순위 목록 그리고 뉴질랜드 농림부 생물방역국 웹사이트에 발표된 연간 작업 프로그램을 통보받음
- 2007년에는 새 수입건강기준을 위한 요청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 결과 21개의 신규 항목이 작업 프로그램에 추가되었으며 우선순위 부여작업은 2년마다 수행됨
 - 새로운 수입건강기준의 개발 요청서는 이제 언제든지 MAF에 제출할 수 있음. 요청서 제출자는 다음 번 우선순위 부여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요청을 확인하기 위해 MAF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것이며 관계당국으로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목록이 제공되고 우선순위 부여과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biosecurity.govt.nz/commercial-imports/import-health-standards/fundingmanagement-system.htm>에서 입수할 수 있음
 - 뉴질랜드 생물방역국은 2008년 7월 수입건강기준의 개발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재심 (independent review)을 허용한다고 공고하였음. 이 재심의 목적은 뉴질랜드 농림부가 기준 초안에 대해 상담을 받은 사람이 큰 우려를 제기한 과학적 증거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으며 독립적 재심의 요청은 다음 사항들에 대해 상의한 후 할 수 있음
 - (a) 제안된 수입건강기준과 연관된 위험 분석 또는 (b) 제안된 수입건강기준. 요청은 생물방역국장(Director-General)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a) 과학적 증거에 대해 기술담당 최고책임자가 고려한 정도에 대한 자신의 큰 우려를 설명하는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b) 과학적 증거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야 하며 (c) 상담 중에 기술담당 최고책임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우려와 관련된 추가적인 과학적 정보를 요청서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biosecurity.govt.nz/files/regs/imports/gazette-notice-4582.pdf>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식품 수입절차

● 관련 법규:

Food (Prescribed Foods) Standard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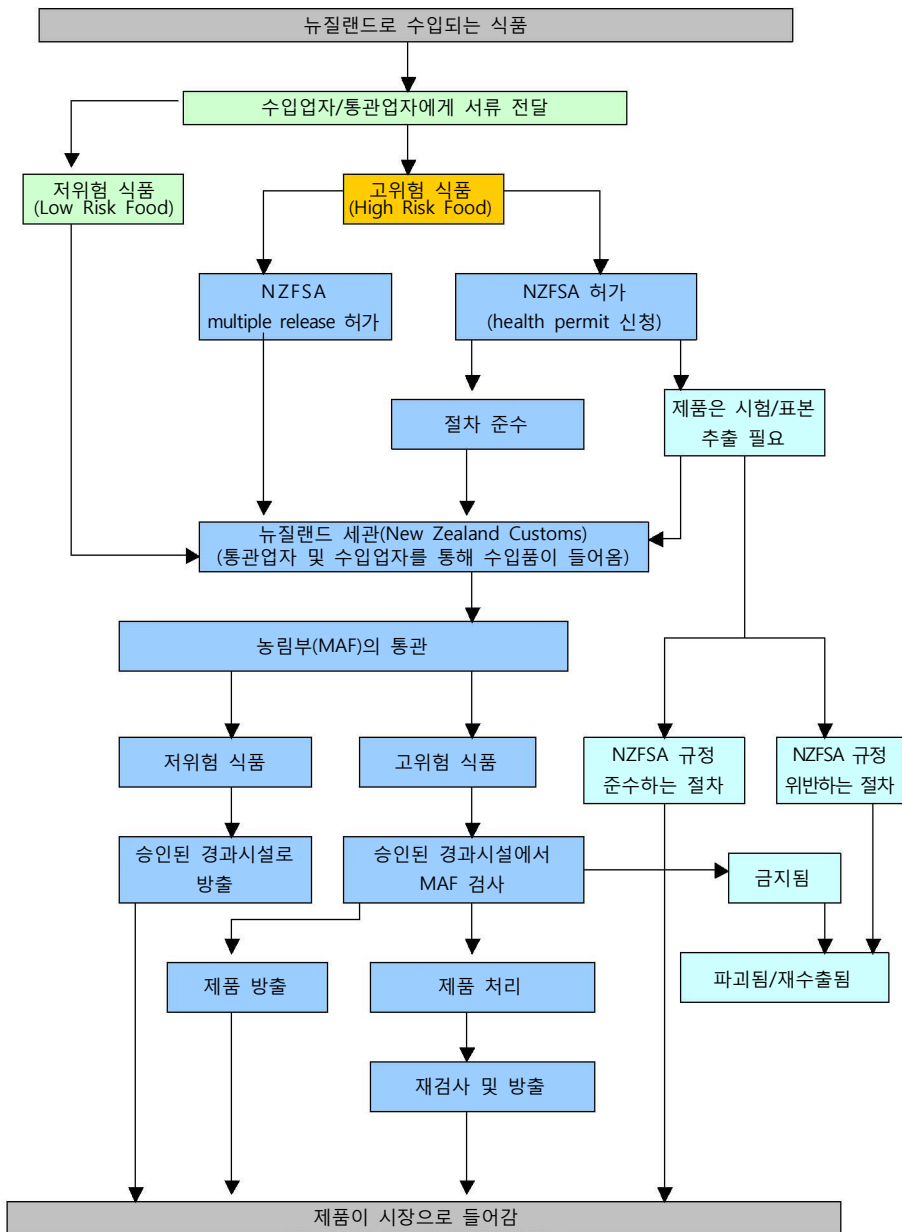
Food (Importer Listing) Standard 2008

Food (Importer General Requirements) Standard 2008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 뉴질랜드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the Food Act 1981과 관련 법규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수입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짐. 모든 식품 수입업자는 사전에 NZFSA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 때 업체명,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기입해야 함. 또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고, 운반, 보관되는지 그리고 구매 기록과 공급자에 대한 기록도 제공해야 함

〈뉴질랜드의 식품수입절차도〉



■ 식품 첨가물 규정

- FSANZ는 식품기준규범(Food Standards Code)에서 식품기준을 개발하고 변경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 규범에서 식품첨가제를 규율하는 섹션인 기준 1.3.1은 수년 동안 시행되어 왔음. 그것은 이전의 호주 식품기준규범(Australia Food Standards Code)과 이전의 1984년 뉴질랜드 식품규정(New Zealand Food Regulations)의 식품첨가제 관련 조항에 기초해 개발되었으며 이 규범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첨가제를 다루고 있음. 일부 첨가제는 특정 허가를 받고 식품에서 허용되는 수준이 있고 다른 일부 첨가제는 GMP(우수제조관행)에 의해 결정되는 수준으로 허용되며 식품첨가제의 허용된 사용에 관한 정보는 이 규범의 기준 1.31의 Schedule 1에 나와 있음. 가공 식품에서 GMP에 따라 허용되는 잡다한 첨가제 목록은 기준 1.3.1의 Schedule 2에 나와 있음
- EU의 식품음료산업연합회(Confederation of Food and Drink Industries of the European Community)는 호주산 및 뉴질랜드산 식품을 식품첨가제에 관한 기준을 Schedule 1으로 분류하기 위해 변경된 기본식품 분류시스템을 개발하였음(이 규범의 기준 1.3.1). 지난 수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feedback)은 Schedule 1과 이 기준의 기타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였고 FSANZ는 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Schedule 1과 개발 조항을 수정하는 과정에 있음
- 새로운 식품첨가제의 승인 신청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홈페이지에 찾아볼 수 있음 <http://www.foodstandards.gov.au/standardsdevelopment/informationforapplic559.cfm>
- 유전자 변형된 식품첨가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해야 하며 유전자 변형 재료의 선언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FSANZ 가이드라인, Labeling Genetically Modified Food(유전자 변형 식품의 라벨 표기)를 참조해야 함

■ 잔류 농약과 기타 오염 기준

- FSANZ는 지정된 식품 안에 들어 있는 지정된 금속 및 비금속 오염물질과 천연 독성물질의 최고수준(ML)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오염물질과 천연독성물질에 관한 정보는 이 규범의 기준 1.4.1에서 볼 수 있음
- 식품에서 허용되는 농약 잔류량이나 동물용 화학약품 잔류물의 상한한도는 최대 잔류허용기준(MRL)으로 알려져 있고 FSANZ는 호주의 경우에만 MRL을 설정하며 이것들은 본 규범(the Code)에 나와 있으며 FSANZ는 뉴질랜드에서 MRL을 설정하고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을 제외하고)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모든 수입식품과 국산식품은 뉴질랜드 (농약 최대잔류 허용기준) 식품기준 (MRL Standards)을 준수해야 하며 MRL 기준 하에서 식품 안에 들어 있는 농업용 화합물은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 (구체적인 MRL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0.1mg/kg의 '기본' MRL을 포함하여) MRL 기준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MRL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Codex MRL을 준수할 수 있음

■ 포장재 및 컨테이너 요구 조건

<식품 포장재>

- 1981년의 뉴질랜드 식품법 하에서 식품 포장재는 식품이 안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오염되게 하지 말아야 하며 오염물질에 관한 본 규범의 특정 요건도 충족되어야 함(기준 1.4.3 식품과 접촉하는 물건과 물질(Articles and Materials in Contact with Food) 참조). 제품이 안전하고 법규를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식품 제조업자 및 판매자의 책임이며 실제로는 포장재 공급자가 제품이 본래 취지에 따라 사용하기에 적절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유럽연합(EU) 또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기준처럼 인정되는 국제적인 식품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포장재가 식품용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될 것임

〈수출용 제품 선적에 사용되는 목재 포장재〉

- 수입업자들은 뉴질랜드 입국을 위한 생물방역 통관허가를 받으려면 생물방역법(Biosecurity Act(1993))에 따라 식물위생 요건(phytosanitary requirements)을 요약하고 있는 수입건강기준(HIS)을 준수해야 함. 모든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포장재에 대한 HIS는 생물방역법(1993)의 요건과 국제공장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1997) 하에 뉴질랜드의 의무에 따라 개발되었음. "식물위생 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 for Phytosanitary Measures: ISPM) 기준 15"에 따라 처리되고 인증되는 목재포장재는 뉴질랜드 기준과도 부합됨

〈해상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건강기준〉

- 모든 컨테이너는 검사관으로부터 생물방역 통관허가를 받기 전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현재의 수입건강기준은 Sea Containers from All Countries 섹션에서 찾아 볼 수 있음) 모든 수입 컨테이너는 2003년 9월 1일부터 검역신고서(Quarantine Declaration)(컨테이너가 내외부적으로 검사되었고 오염물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과 사용된 포장재와 목재포장재의 유형을 선언하는 포장시설 또는 수출업자 시설의 관리책임자(manager)에 의해 서명된 문서), 컨테이너 번호, 원산지(컨테이너가 포장된 경우), 컨테이너가 뉴질랜드로 향하는 운송선에 처음 선적된 항구, 수출업자, 수입업자, 포장재, 검역신고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처리 인증을 포함하는 내용물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설명 등 컨테이너 및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를 수반해야 함
- 상기 외에도 일부 컨테이너는 '위험도가 높은 것(high risk)'으로 간주될 수 있음. 이러한 컨테이너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되어야 함
 - 항구지역에서 하역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관에 의해 6개 측면 외부검사를 받아야 함
 - 메틸브로마이드로 훈증 소독을 받아야 함
 - 컨테이너가 특정 오염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생물위생 인증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수반해야 함

- 외부검사 대신 사용하려면 국경관리 담당국장(Director, Border Management)이 승인한 탈오염 또는 인증 시스템을 거쳐야 함
- 통관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규제대상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컨테이너의 내부표면이나 외부표면 또는 둘 다 오염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추가 인증하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특정 경우에는 컨테이너 다중 도착에 대해 최고 1년의 기간 동안 인증이 적용될 수도 있음

〈항공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건강기준〉

- 뉴질랜드로 식품을 수입하는 데 사용되는 항공 컨테이너는 청결에 관한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함. 내부 측면과 외부 측면을 포함하여 컨테이너의 모든 부분은 오염이 없어야 함. 모든 컨테이너는 또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이 제거해야 함
 - 동물, 곤충, 또는 기타 무척추동물(어느 생명주기 단계든지), 계란 껍질(egg casings), 뗏목(rafts), (피, 뼈, 섬유, 고기, 분비물, 배설물, 기타 등을 포함하여) 동물에서 나오는 유기물질
 - (과일, 종자, 나뭇잎, 나뭇가지, 뿌리, 나무 껍질, 톱밥 또는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여) 식물 또는 식물제품
 - 흙과 물
- 추가 정보를 보려면 MAF 수입건강기준 : Air Containers from any Country(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에어 컨테이너) (MAF 규제국(MAF Regulatory Authority) 152.07.01I)를 참조할 것

■ 라벨링 규정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규범(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이하 본 규범)에 따라 라벨 표시를 해야 함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식품은 영어로 분명하게 라벨 표시를 해야 하며(영어 외에도 해당 정보와 모순되지 않는 한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식품에 관한

특정 보건 및 안전 정보(예를 들어, 카페인 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의 존재)는 완전한 라벨이 요구되지 않을 때에도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본 규범에서 명시한 개별 식품 기준에 따라 추가 라벨 표시 정보가 요구될 수도 있음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함

- 기본 표시사항 - 판매 및 급식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포장의 라벨에는 식품이름, 식품유형(Prescribed Name), 로트(Lot Identification), 공급자 이름 및 주소 (Name and business address in New Zealand of the supplier), 의무 표시사항 주의사항, 권고 및 고지문구(Mandatory warning and advisory statements and declarations), 원재료명(Ingredient listing), 날짜 표기(Date marking), 영양성분 (Nutrition information panel), 특정 원료/성분 함량비율 표기(Percentage labelling - characterising ingredient/s and component/s), 사용 및 보관 방법 (Directions for use or storage), 원산지(Country of Origin) 등의 정보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 포장돼 있지 않은 제품, 외부 포장내에 개별 포장돼 있는 제품으로 외부 포장 단위별로 판매되는 식품, 생산되는 곳에서 판매되는 경우, 과일 또는 채소 절단 제품, 구매자 주문에 의해 포장 배달되는 제품 등은 라벨링 규정에서 제외됨
- 특정 식품군에 대한 추가 표시사항 - 기본 표시사항 외에 추가 정보 표시하여야 함.
 - 육류 및 육류제품(Meat and Meat Products), 어류 및 어류제품(Fish and Fish Products), 식용유지(Edible Oils), 과일/야채 주스(Fruit Juice and Vegetable Juice), 비알코올음료 및 양조음료(Non-Alcoholic Beverages and Brewed Soft Drinks), 카바(Kava : 마취성을 지닌 폴리네시안산 식물뿌리로 만든 음료), 알코올 음료 및 알코올 함유식품(Alcoholic Beverages and Food Containing Alcohol), 포도주 및 포도주 제품(Wine and Wine Products), 주류(Sprits), 꿀(Honey), 유아 조제식품(Infant Formula Products), 유아용 식품(Foods for Infants), 조제된 대용식 및 보조식품(Formulated Meal Replacement and Formulated Supplementary

Foods), 조제된 보조 스포츠 식품(Formulated Supplementary Sports Foods), 소금 및 소금제품(Salt and Salt Products)

- 라벨 언어 - 표시언어는 영어 및 다른 언어 병기도 가능하지만 영어로 된 내용과 다르지 않아야 하며 활자 크기, 활자체, 표기위치 및 색상 등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고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함. 바탕색이나 장식된 로고 등에 의해 라벨에 있는 글씨를 분간하기 어렵게 하면 안 되며 경고 문구 표기는 반드시 3mm이상의 활자체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함. 단, 포장 표면적 100cm² 이하의 소포장 제품의 경우 최소 1.5mm까지 허용함
- 식품유형과 로트 표기 - 식품포장에는 식품유형이나 이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정확한 이름이나 유형을 표기해야 함. 예를 들어 과일 요구르트에는 반드시 과일이 들어 있어야 하고 과일향만 첨가했을 경우에는 과일맛 요구르트로 표기해야 함. 식품 리콜이 발생하는 경우에 도움이 되도록 포장 또는 제조된 장소와 식품의 로트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개별 포장된 경우 외부포장에 로트번호가 있으면 개별포장에는 생략할 수 있음. 또한 공급자 이름과 주소를 상세히 표기하며 식품 위생과 안전에 대한 리스크 정도에 따라 주의사항을 비롯한 정해진 경고 문구나 권고 사항 또는 알림 문구를 표시해야 함
- 의무 표시사항, 주의사항, 권고 및 알림 문구 -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리스크 정도에 따라 주의사항을 비롯한 정해진 경고문구나 권고사항 또는 알림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① 특정서식의 경고문구 (Prescribed Statements) 의 표시

- 다음의 식품군은 *Food Standards Code*에 나와있는 대로 정해진 주의사항 (Warning Statements)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Condensed milk, modified milk and skim milk (Standard 1.1.3)
 - Kava (Standard 2.6.3)
 - Foods for Infants (Standard 2.9.2)
 - Formulated Supplementary Sports Foods (Standard 2.9.4)

- Royal jelly presented as a food and food containing royal jelly(Standard 1.2.3)
 - 유전자 조작기술을 이용한 식품 (food produced using gene technology)은 제품 이름과 원료 이름에 반드시 ‘genetically modified’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
- ② 권고사항 문구(Advisory Statements)의 표시
- *Food Standards Code*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문구일 필요는 없으며 제조사가 임의로 표기할 수는 있으나 의미가 달라져서는 안됨
- ③ 특정 성분에 대한 고지문구(declaration of certain substances in food)의 표시
- 제품 원료나 원료중에 함유된 성분, 첨가제 또는 제조공정상 첨가된 보조제를 통해 최종제품에 함유된 특정성분의 혼입여부를 반드시 별도로 알려주어야 (declaration) 함
 - 해당 원료 리스트
 - 글루텐(Cereals containing gluten and their products, namely, wheat, rye, barley, oats and spelt and their hybridised strains other than where these substances are present in beer and spirits)
 - 갑각류(Crustacea and their products)
 - 계란 및 난제품(Egg and egg products)
 - 생선류(Fish and fish products, except for isinglass derived from swim bladders and used as a clarifying agent in beer and wine)
 - 우유 및 유제품(Milk and milk products)
 - 견과류(Peanuts and soybeans, and their products)
 - 설파이트(아황산); Added Sulphites in concentrations of 10 mg/kg or more
 - 각과류(밤, 호도등), 참깨(Tree nuts and sesame seeds and their products other than coconut from the fruit of the palm *Cocos nucifera*)
- 원재료명 표기 - 제품명이 원료명과 같은 경우, 용기포장 물, 알코올 음료, 소포장 제품, 라벨이 없는 유리용기에 포장된 우유 및 크림제품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원재료명을 표기해야 함. 원재료명은 중량기준으로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표기하며 기성제품이나 이미 혼합된 물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기성 제품명을 쓰고 기성

제품안에 든 원료를 괄호 안에 자세히 기술하거나 기성 제품 안에 든 원료 모두를 표기함

- 다음의 경우는 원재료명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함
 - 시리얼(cereals) : 곡물 종류를 표기 하여야 함 (예, wheat, rye, barley, oats, spelt)
 - 지방/유지류(fats or oils) : 식물성 또는 동물성, 원료 물질 (예, peanut oil, soy bean oil, sesame oil), 유지방 및 동물성 지방이 함유된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함
 - 생선류(fish) : 갑각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시 (예, crab, lobster)
 - 유고형분(Milk solids) : 구체적으로 표시 (예, skim milk powder, whey powder)
 - 견과류(nuts) : 구체적인 종류 표시 (예, peanut, chestnut)
 - 전분류(Starch) : 원료 물질을 구체적으로 표시 (예, wheat starch, potato starch)
 - 당류(Sugar) : 구체적으로 표시 (예, white sugar, white refined sugar, caster sugar, castor sugar, loaf sugar, or cube sugar, icing sugar, coffee sugar, coffee crystals, raw sugar)
- 날짜 표기 - 제품 저장 수명이 2년 미만인 포장식품에는 반드시 품질유지 기한 또는 유통기한 날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표시. 유통기한 날짜가 표기된 제품은 그 날짜 이후에는 판매되어서는 안 되지만 품질유지 기한 날짜가 표기된 제품은 제품 파손이나 상하지 않았다면 계속 판매해도 됨.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제품은 정해진 보관, 유통조건에서 그 날짜가 지나면 핵심 영양소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줄어드는 제품이나 구매 후 열처리 없이 바로 섭취가 가능한 즉석 냉장식품 등임. 날짜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품질유지기한 2년 이상의 제품, 개별포장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스제과, 포장 표면적이 100cm² 이하의 소포장 등임
- 영양성분 표기 -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영양성분에는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 나트륨 등이 있고 열량 단위는 kJ 또는 kJ과 Cal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은 알코올음료, 허브향신료, 허브 추출물, 식초, 소금, 차 및 커피류, 식품첨가물, 공정보조제, 단일 재료로 구성된

과일, 채소, 육류, 가금육, 생선제품, 소포장제품, 기금마련 행사용 제품, 용기포장물 제품, 잼류, 젤라틴, 알코올 함량 0.5% 미만의 음료 등임

〈일반적인 영양정보 표시〉

NUTRITION INFORMATION		
Servings per package 포장당 1회제공량 수 : (insert number of servings)		
Serving size 1회 제공량 : g (or mL or other units as appropriate)		
Quantity per Serving 1회 제공량당 함량		Quantity per 100 g (or 100 mL)
Energy	kJ (Cal)	kJ (Cal)
Protein	g	g
Fat, total	g	g
- saturated	g	g
Carbohydrate	g	g
sugars	g	g
Sodium	mg (mmol)	mg (mmol)
(insert any other nutrient or biologically active substance to be declared)	g, mg, µg (or other units as appropriate)	g, mg, µg (or other units as appropriate)

영양 정보		
포장 1개당 섭취분량 : (섭취분량의 횟수를 써 넣는다)		
섭취분량 크기: g (또는 mL 또는 적절한 단위)		
	1회 분량의 함유량	100g당 함유량 (또는 mL당)
에너지	KJ(Cal)	KJ(Cal)
단백질	g	g
지방(합계)	g	g
- 포화	g	g
탄수화물	g	g
당	g	g
나트륨	mg(mmol)	mg(mmol)
(표시할 필요가 있는 기타 영양소 또는 생물학적 활성 성분을 써 g, mg, µg(또는 적절한 단위) g, mg, µg(또는 적절한 단위) 넣는다)		

〈특정 영양성분의 세부함량 표시〉

NUTRITION INFORMATION		
Servings per package: (insert number of servings)		
Serving size: g (or mL or other units as appropriate)		
Quantity per Serving	Quantity per 100 g (or 100 mL)	
Energy	kJ (Cal)	kJ (Cal)
Protein, total	g	g
- *	g	g
Fat, total	g	g
- saturated	g	g
- **	g	g
- trans	g	g
- **	g	g
- polyunsaturated	g	g
- **	g	g
- monounsaturated	g	g
- **	g	g
Cholesterol	mg	mg
Carbohydrate	g	g
- sugars	g	g
- **	g	g
- *	g	g
- **	g	g
Dietary fibre, total	g	g
- **	g	g
Sodium	mg (mmol)	mg (mmol)
(insert any other nutrient or biologically active substance to be declared)	g, mg, µg (or other units as appropriate)	g, mg, µg (or other units as appropriate)

〈일일 영양기준치 표기〉

NUTRITION INFORMATION			
Servings per package: (insert number of servings)			
Serving size: g (or mL or other units as appropriate)			
Quantity per Serving	% Daily Intake* (per Serving)		Quantity per 100 g (or 100 mL)
Energy	kJ (Cal)	%	kJ (Cal)
Protein	g	%	g
Fat, total	g	%	g
– saturated	g	%	g
Carbohydrate	g	%	g
– sugars	g	%	g
Sodium	mg (mmol)	%	mg (mmol)
(insert any other nutrient or biologically active substance to be declared)	g, mg, µg (or other units as appropriate)	%	g, mg, µg (or other units as appropriate)

* Percentage Daily Intakes are based on an average adult diet of 8700 kJ. Your daily intakes may be higher or lower depending on your energy needs.

- 특정 원료/성분 함량 비율 표기 - 제품의 특징을 결정짓는 원료나 성분의 경우 그 함량비율을 표시해야 함. 이는 원료/성분명이 제품명으로 사용되는 식품, 소비자가 해당 원료/성분이 제품이름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식품, 포장에 글자 사진 또는 그림으로 해당 원료/성분이 강조되어 있는 경우 등이며 함량비율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는 미량으로 사용되는 향료, 한 가지 원료만 사용하는 경우, 함량 비율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임
- 원산지 표기 -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 규격에서 제정한 식품 원산지 표시는 호주에만 적용되며 뉴질랜드에서 유통되거나 수입되는 상품의 원산지표시 기준은 영국연방의 규정에 따름. 원산지 표기 대상은 포장된 식품, 신선어류, 가공어류, 돼지고기 및 가공품, 채소 또는 과일과 그 가공품 등임. 원산지 표기적용 대상이 아닌 장소는 식당, 구내매점, 학교 급식소, 자체급식소, 구치소, 병원 등과 같이 바로 취식이 가능하도록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임. 'Product of'의 표현을 쓰려면 실제 사용한 모든 원료가 해당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고 가공과정도 해당 국가에서 이뤄져야하며 'Made in'은 상당부분의 원료가 해당국가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제조비용의 50% 이상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해야 함

〈라벨링 제안〉

1) 다음의 대만산 식품의 예와 같이 처음부터 포장표기를 주요 국제시장의 기준에 맞게 영문으로 병기 해 주면 빠른 속도로 국제화되고 있는 한국 음식에 대한 소개와 판촉의 기회가 확대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내 식품표시 제도도 점차 강화만 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꾸준히 보완되어야 할 것임

- 포장의 미관성과 가독성을 오히려 떨어지게하고 혼란스럽기까지한 활자크기에 대한 기준
- 제품저장수명(Shelf Life) 에 대한 기준: 제조년월일,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및 유통기한(Use By)
- 영양성분표기 기준 (예, Cal와 kJ병기)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표시기준 : 각국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다양함으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원산지 표기 기준 : 각국의 원산지 표기에 대한 기준의 이해(‘Product of’ ‘Made in’)



2) 뉴질랜드 수출시 항목별 표기 주의사항 및 요령

① 식품명, 식품유형 (Prescribed Name)

- 식품명에 식품유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식품규격에 나와 있는 식품유형을 찾아서 표기 할 필요는 없음 (예, Ottogi Pancake Mix)

② 로트 (Lot Identification)

- 만일의 경우 리콜을 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추적과 유통상품 회수가 용이하도록 날짜표시뒤에 가급적 짧은 시간대별로 비표시를 하는 것이 리콜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로트관리가 어려울 경우 날짜표시로 이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 불필요

③ 공급자 이름 및 주소 (Name and business address in New Zealand of the supplier)

- 포장재에 국가별 공급자 이름과 주소를 함께 미리 표기해 두는 것이 좋음
- 뉴질랜드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에 있는 공급업자(제조원, 수입자, 판매자등)의 실제 상세한 주소 표기하여야 함

④ 의무 표시사항; 주의사항, 권고 및 고지문구(Mandatory warning and advisory statements and declarations)

- 최근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포장재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한국식품의 경우 특별히 참깨나 견과류의 사용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지문구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해야 함

⑤ 원재료명 (Ingredient listing)

- 반드시 사용한 모든 원료를 표기하여야 함
- 식품첨가물의 경우 해당 첨가물의 유형과 코드번호를 표기해야 함
예, Emulsifier (322)

⑥ 날짜 표기 (Date marking)

- 정해진 보관, 유통조건하에서 그 날짜가 지나면 핵심 영양소함량이 기준치이하로 줄어드는 제품이나 구매 후 열처리 없이 바로 섭취가 가능한 즉석냉장식품

(Ready-to-eat Chilled Foods)의 두가지 경우만 Use By(유통기한)를 표기하고 그 외의 제품은 대부분 Best Before(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면 됨

- 기존의 포장재에 이미 일부인이 되어있다면 이에 대한 영문설명이 필요. 예, ‘Best Before: Printed on the surface (yyyy.mm.dd)’

⑦ 영양성분 (Nutrition information panel)

- 반드시 kJ단위로 에너지 표기가 되어야 하고, % 일일 영양기준치도 성인 1일 섭취량이 8700kJ 기준임. 또한 다음 문구를 반드시 병행표시하여야 함
“Percentage Daily Intakes are based on an average adult diet of 8700 kJ. Your daily intakes may be higher or lower depending on your energy needs.”

⑧ 특정 원료/성분 함량비율 표기 (Percentage labelling – characterising ingredient /s and component/s)

- 평균 함량을 %로 표시하되 “per serving and per 100g” 이나 ‘per serving and per 100mL’로 표기함
- 함량이 5% 이상일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는 표기하지 않으며 함량이 5% 미만일 경우는 0.5% 단위로 반올림 표기함

⑨ 사용 및 보관 방법 (Directions for use or storage)

- Use By(유통기한) 또는 Best Before(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조건과 함께 표시함. 예, ‘Store in a cool dry place out of direct sunlight’

⑩ 원산지 (Country of Origin) 표기

- ‘Product of’ 와 ‘Made in’의 구분
 - ‘Product of’, ‘Produce of’, ‘Produced in’ 등의 표현을 쓰려면 실제 사용한 모든 원료가 해당 국가산이어야 하고 가공과정이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함
 - ‘Made in’, ‘Manufactured in’, ‘Korean made’ 등의 표현을 쓰려면 상당부분의 원료가 해당 국가에서 가공되어 변화되고 제조비용의 50% 이상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여야 함. 그러나 이 기준은 적용상 애매한 부분이 있고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는 것이 좋음
‘Made in Korea from imported ingredients’

‘Packaged in Korea from local and imported ingredients’

· 원산지 표기 예

- 한국에서 생산한 땅콩을 한국산 원료를 사용해서 조미한 제품을 한국에서 생산한 경우 Product of Korea

- 한국에서 생산한 땅콩을 외국산 향신료를 사용해서 조미한 제품을 한국에서 생산한 경우 Made in Korea

중국산 땅콩과 독일산 헤이즐넛 그리고 터키산 아몬드를 한국의 공장에서 혼합해서 가공품을 만들었을 경우 Blended Nuts from China, Germany and Turkey

나. 수출입관련 제도

■ 통관 및 검역제도

- 뉴질랜드는 국외로부터 동식물에 포함된 각종 해충·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선농산물을 통관할 때 그 품목에 해당하는 뉴질랜드 농림부(MA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에서 정하는 IHS(Import Health Standard)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검역이 불가능하며 통관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수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2010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IHS가 마련되어 있는 신선농산물은 배(Pear, *Pyrus pyrifolia*, 'Korean Nashi Pear'로 알려짐) 한 품목임
- 현재 감귤, 포도 등이 우선심사품목으로 선정되어 기준이 마련 중이며, 버섯, 피망, 감등의 신선농산물과 국화, 장미, 백합 등의 화훼류 품목이 신청 상태임
- 신선농산물이 아닌 가공농산물의 경우 검역이 까다롭지 않고 IHS와는 상관없이 통관이 가능함

■ 일반 통관 절차

- 수입업자는 상업송장 등 관세평가 및 세 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함.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출 이전에 관세, GST(2010.10.1일부터 부가가치세 15%) 및 특별 소비세 (Excise Duty) 등을 완납하고 세관에서 발행하는 물품 인도증(Delivery Order)을 교부 받아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모든 수입업자는 통관업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 반드시 세관 인터넷페이지 (www.cusweb.co.nz) 또는 EDI를 이용하여 전자 문서로 반출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추가로 송장, B/L, Packing List 등의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GST라 불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산정 기준 가격은 세관신고가격+관세+운송 및 보험료 포함 가격임. 또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NZ\$ 28.75의 IETF(Import Entry Transaction Fee)라 불리는 수입 통관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여기에는 농림수산부에서 부과하는 NZ\$ 4의 검역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
- 수입 통관서류 작성시 기입 사항은 뉴질랜드 세관이 발행하는 Fact Sheet 7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통관 종류, 입국 항구, 상업송장 번호, 운송 수단, 수입일자(일/월/년), 물품 상세 내역 등임

〈물품 검사〉

- 세관에서는 CASPER라 불리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수입품을 검사하는데, 평균 검사 비율은 7.5~10% 수준임. 그러나 신선농산물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함

〈운 송〉

- 뉴질랜드는 총 길이가 2011km나 되고, 구불구불한 도로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는 적지만 널리 산재되어 있는 나라임.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운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약 9만 3000km의 통합 도로망과 4200km의 철로가 가설되어 있음

- 대외 교역은 약 90%가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나머지 10%가 항공을 통해 이루어 짐. 선박 운송의 경우 30여개의 외국 회사가 맡고 있으며, 항만 관리 운영도 이제는 거의 민영화 되었음

〈주요 항구별 수출 물동량 및 금액〉

(단위 : US\$ 백만, %)

항구(지역)	점유율	금 액		
		2007년	2008년	증감
Whangarei	0.97%	163,249	220,571	25.99%
Auckland Seaport	25.07%	5,001,103	5,673,106	11.85%
Tauranga Seaport	23.21%	4,289,703	5,251,779	18.32%
Taharoa	0.11%	7,966	25,741	69.05%
Gisborne	0.33%	68,590	74,151	7.50%
New Plymouth	10.25%	1,561,655	2,319,951	32.69%
Napier	6.11%	1,451,343	1,383,125	-4.93%
Wellington Seaport	2.31%	507,253	522,064	2.84%
Nelson	2.23%	505,082	504,089	-0.20%
Picton	0.07%	19,335	14,794	-30.70%
Christchurch Seaport(Lyttelton)	8.56%	1,646,769	1,935,879	14.93%
Timaru	2.58%	551,562	583,658	5.50%
Dunedin Seaport	15.13%	2,745,360	3,423,993	19.82%
Invercargill Seaport(Bluff)	3.07%	689,234	693,983	0.68%

자료 : 뉴질랜드 통계청

〈컨테이너 비용〉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2010년 9월 기준/Toll Global사 견적 기준)

- 내륙 운송비 : US\$270 (오클랜드 지역 내 운송비)
- 해상 운송비 : US\$3,000 (오클랜드 → 인천 또는 부산)
 - 한국 → 뉴질랜드 해상운송비 : 뉴질랜드 → 한국의 경우보다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위 운송비보다 약간 비싼 편임.
- 한국 → 뉴질랜드간 운송 소요 기간 : 약 3주

■ 뉴질랜드 관세

- 뉴질랜드 관세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에서 파악할 수 있음. 동 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한 세율 검색방법은 “웹 초기화면〉Library〉The Working Tariff Document” 순으로 접근하고, 해당품목 군 섹션을 찾은 후 HS Code를 검색하면 pdf파일로 검색이 가능함. 동 pdf파일에서 특혜관세 표기는 AAN, CA, CN, TH, TPA 등의 기호가 나오는데, 각각 호-뉴-아세안 특혜세율, 캐나다 특혜세율, 중국 특혜세율, 태국, 특혜세율, 태평양 도서국 특혜세율을 의미함

다. FTA 체결 및 추진현황

■ 무역 협정 체결 국가

- 뉴질랜드는 2008년 4월 중국과 FTA를 체결했고, 2009년 10월부터 발효되었음. 2009년 3월에는 호-뉴-아세안 FTA를 체결했고, 이어서 10월에는 말레이시아와의 FTA를 체결에 성공하였으며, 후속절차를 거쳐 2010년 중 발효될 예정임
- 또한 아래 5개국과는 FTA에 준하는 협정(경제간일화 협정, CER)을 맺고 상호 경제 협력 및 관세 장벽 완화 등의 혜택을 공유하고 있음

- 호주 : Australia and 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1983년 체결)
- 싱가포르 : New Zealand and Singapore Closer Economic Partnership(2001),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2005)
- 태국 : New Zealand and Thailand Closer Economic Partnership(2005)
- 칠레 :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2005)
- 브루나이 :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2005)
- 홍콩 : Close Economic Partnership(CEP) (2010)

〈현재 자유무역 협상 중인 국가〉

대상국	협상 개시 일자 및 체결 일자	추진현황
GCC	200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말 기준, 주재국의 8번째 수출 대상 지역임. - 낙농품 및 양고기를 중심으로 한 GCC 지역에 대한 수출성장률은 전체 성장률 3.7%를 크게 상회하여 지난 6년간 평균 10%에 달함으로써 전략적 중요성 증가. - 관세,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을 진행 중임. - 뉴. 정부는 2009.11.2일 GCC와의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합의문 작성 및 각국 내부절차 이행 등은 2010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
한국	200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11월 :한-뉴 FTA 민간공동연구 완료 - 2008.4월 : 양국 대표 라운드 테이블 - 2008.9/11월 : 예비협의회 교환 개최 - 2009.3월 : 양국 FTA 협상 공식 개시 선언 - 2009.6월 : 1차 협상 - 2009.9월 : 2차 협상 - 2009.12월 : 3차 협상 - 2010.5월 : 4차 협상 - 2010.7월 : 5차 협상
인도	20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3월 : 뉴정부 양국협상 개시 승인 - 2010.1월 : 인도정부측도 양국협상 개시 승인
TPP (범태평양)	20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3월 : 제1차 회의가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됨. {참가국 : 뉴질랜드, 호주,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 + 미국, 페루, 베트남 (캐나다, 말레이시아 추가 참여 가능)} - 2010.6월 : 2차 협상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림 - 2010.10월 : 3차 협상(예정)

자료 :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 뉴-중국 FTA 주요 내용

<협정의 의미 : 서방 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 뉴질랜드는 3년여에 걸친 15회의 협상을 통해 서방 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2008년 4월 초 뉴질랜드 측에서는 총리를 포함 150여명이 넘는 대규모 통상 사절단이 중국을 방문, 북경 인민회관에서 FTA 조인식을 가짐
- 이번 협정안은 뉴질랜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10월 정식 발효되었으며 최대의 수혜 산업인 농·수·축산 분야 관련 기업들은 이를 계기로 대 중국 수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음

<뉴질랜드, 연간 NZ\$ 1억의 관세 절감 효과>

- 뉴질랜드의 대 중국 수출은 2009년 기준 US\$ 22억으로 2008년 대비 29.2%의 높은 수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호주, 미국에 이어 제3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2004년부터 2006년 3년간 뉴질랜드의 대 중국 수출에 대한 연평균 관세액 규모는 NZ\$ 1억1,800만에 달했으나 이번 협정으로 인해 이중 95%에 달하는 품목이 관세 철폐의 혜택을 보게 돼 연간 NZ\$ 1억1,500만의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되었음
- 세부적으로는 전체 대 중국 수출의 35%를 차지해 온 관세율 5%이하 적용 상품에 대한 관세가 협정 발효와 함께 즉시 폐지되고 전체 수출품 중 6%를 차지하는 양모 제품에 대해서는 2009년 1월부터 관세가 사라짐. 유아용 분유를 포함한 31%의 품목은 2012년부터 관세가 철폐되고, 대다수 낙농 제품을 포함한 나머지 30% 역시 2016년부터 품목별로 점차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뉴질랜드-중국 관세 철폐 일정 및 품목〉

관세 철폐 시기	뉴질랜드 수출		뉴질랜드 수입	
	수출비중	주요 상품	수입비중	주요 상품
2008년 10월	35.3%	Fibreboard 일부, 어분, 구리 및 알루미늄 고철, 정결탄 및 철용재	38.6%	수입품의 37%가 이미 무관세
2009년 1월	6%	양모 수출품 중 75% (8년에 걸쳐 관세 철폐 예정)		
2012년 1월 2013년 1월	31.2%	유아용 분유, 카세인, 요거트, 냉동 생선, 메탄올, 동물성 지방 및 기름, 사과, 와인	35.3%	철, 백색가전, 플라스틱류, 가구, 타이어, 필기구
2014년 1월			4.2%	섬유, 일부 의류, 신발 및 카펫
2016년 1월	4.6%	고기내장(식용), 오렌지, 오렌지주스, 집유기, 양고기, 쇠고기, 키위, 양가죽	21.5%	의류 및 신발
2017년 1월	2.5%	버터, 치즈, 우유		
2019년 1월	15.2%	전유 및 탈지유 가루		

자료 : 뉴질랜드 외무부

■ 시사점

〈뉴질랜드 낙농 제품의 대 중국 수출 가속화로 관련 제품 가격 급등 우려〉

- 대 중국 수출품의 20%를 차지하는 낙농 제품 수출은 2007년도 '06년 대비 16%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는데 이 같은 추세는 2012년 유아용 분유 및 요거트의 관세가 철폐되고, 2019년까지 낙농제품 전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면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 뉴질랜드 주요 수입 품목 중 목재, 원유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낙농제품은 최근 국제 시세의 급등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중국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낙농 제품 소비가 급증하여 뉴질랜드 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높은 가격과 공급 부족으로 장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됨

-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와 별도로 중국인의 뉴질랜드 입국 및 취업 기회, 투자 기회 역시 대폭 넓어지게 되어 양국간 인적 교류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것임. 특히 인구 420만 명에 불과한 뉴질랜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협정 체결은 중국이 서방 국가와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의 아시아 대양주 시장 지배력 강화의 첫 신호탄임

■ 뉴-말레이시아 FTA 주요 내용

<개요>

- 뉴-말 FTA 협상은 2005년 5월 제1차 협상 개시 이후 4년간 10차례 협상을 거쳐 체결되었으며, 말레이시아는 뉴질랜드가 7번째(중국, 태국, 싱가포르, 호주, ASEAN, P4)로 FTA를 체결한 국가임
- 말레이시아는 뉴질랜드의 제12위 수출대상국이며, 2009년 대 말레이시아 수출규모는 약 US 4.4억달러를 기록했음. 같은 기간중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은 US\$7억 달러 수준이었음
- 뉴질랜드 측은 금번 협정 체결로 교육, 환경, 경영(management) 컨설팅, 수의(數醫) 서비스 등 분야에서 시장접근 기회가 새롭게 확대되었음. 다만, 말레이시아의 종교적 이유로 와인수출 등 주류 제품은 협정에서 제외되었음
- 동 협정 발효 이후 7년간(10-16년 예상) 뉴질랜드 수출품 99.5%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뉴질랜드 수출업자들은 연간 약 NZ\$ 1,000만의 절약효과(duty-savings)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10년부터 키위(키위 수출은 지난 3년간 이미 2배 이상 증가), 버터, 치즈, 분유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
- 한편, 양국은 항공, 해상, 수산 등 서비스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MFN)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뉴질랜드 수출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48시간 이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평 가〉

- 뉴질랜드 측은 지난 2009년 3월에 체결된 지역차원의 호-뉴-ASEAN FTA이은 양자 차원의 FTA 체결을 통해 아시아로의 통합 및 시장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개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대뉴질랜드 주력 수출 상품이 우리의 주요 교역품목(자동차, 전자제품 등)과 크게 경합되지 않고 있어 금번 뉴-말 FTA 체결이 우리에게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한-뉴 FTA 협상

- 2009년 3월 3일-4일 이틀에 걸친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 국빈 방문시 뉴질랜드 존키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공식 개시가 선언되었고 이에 따라 6월에 서울에서 1차 협상(8-12일)이 열렸으며 2차 협상은 9월(14-18일) 웰링턴에서, 3차 협상은 12월(14-18) 서울에서, 4차 협상은 2010.5월(12-14) 웰링턴에서 그리고 5차 협상은 2010년 7월 (5-7) 서울에서 열림. 2010년 7월 협상 이후 추가 협상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
- 2007년 11월 완료된 한-뉴 민간공동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대뉴 수출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이며, 대뉴 수입은 목재류, 육류, 축산가공품 등 1차 산업 제품으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아울러 남반구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한국과의 농산물 재배시기 역시 정반대로서 우리 농업에 주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더구나 뉴질랜드는 쌀 등 곡물의 생산이 없고 키위, 낙농 등 오히려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큰 농업분야가 많아 양국 농림부간 협력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음

6. 한국식품 유통 및 수출유망 품목

가. 주요 수입/유통 품목	107
나. 유통실태	108
다. 경쟁력	109
라. 현지 시장진출 유망품목	110

6_ 한국식품 유통 및 수출유망 품목

가. 주요 수입/유통 품목

- 뉴질랜드가 한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석유제품, 자동차, 가전제품, 철강제품 등이며 2009년 수입액은 US\$862백만 정도에 이르지만 식품 관련 제품의 수입은 활발하지 않으며 변동이 많은 편임

<주요 한국 제품 수입 현황>

(단위 US\$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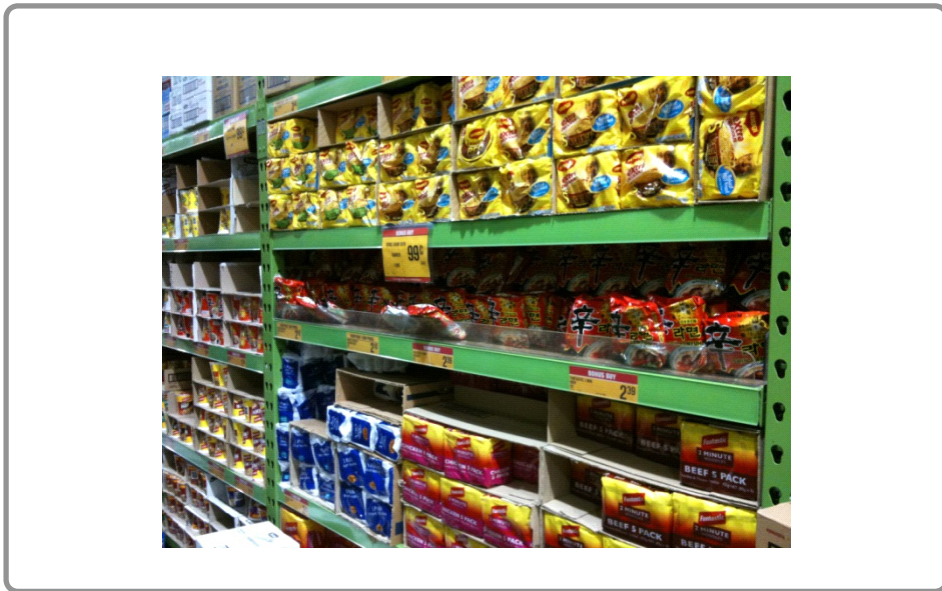
품 목	2007년	2008년	2009년
석유 및 정유	115,221	191,781	277,465
자동차	151,541	127,851	128,168
전자, 전기제품	138,770	120,020	92,223
기계류	84,023	101,607	65,381
철강제품	54,704	60,771	31,917
식품류	12,383	17,175	18,126
총 수입액	875,632	916,663	862,445

자료원 : Statistics New Zealand

- 한국 농수산물의 대뉴질랜드 수출은 2003년 NZ\$ 40백만에 그쳤지만 불과 4년 만에 두 배가 넘는 급등세(2007년 NZ\$ 84백만)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뉴질랜드 전체 시장으로 보면 한국 식품의 수입은 극히 저조한 수준이며 원양어업으로 인한 어류 수출 물량을 제외하고 농산가공품과 기호식품류만으로 보면 US\$12.2백만(2008년)에 그침 (한국무역통계, 2009년 2월)

나. 유통실태

- 한국식품은 늘어난 한국 교민사회에 주로 공급이 되고 있으며 최근 교민 유통업체가 그 점포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임
- 3년 전부터 대형 매장에 농심사의 신라면, 새우깡 등이 진출하기 시작했지만 한국에서 직접 수입하여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의 현지 수입 업체가 수입하여 뉴질랜드에 유통을 하고 있음. 주로 교민 및 아시안에게 판매가 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마케팅이나 홍보가 부족함



- 신선 농산물 중에서 현재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은 배(Pear) 한 품목에 불과함. 배의 경우 연간 수출액은 US\$30만에 불과하나 농산물을 뉴질랜드에 수출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큼. Food Town, PAK'nSAVE 등 대형 식품매장에서도 Korean Nashi Pear로 진열됨. 한국산 배는 kg당 NZ\$ 5 안팎에 판매돼 가격은 비싼 편이나 당도가 높아 소비자 호응이 점점 좋아질 거라 예상됨



(사진제공 KOTRA 오클랜드 KBC)

다. 경쟁력

- 한국의 식품 제품 개발력과 상품화 능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고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어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뉴질랜드는 지리적으로나 규모로 봤을 때 세계 시장의 틈새로 간주할 수 있으며 식품류의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아 시장 진출이나 확대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음
- 뉴질랜드에서 주로 유통, 판매되는 제과류, 즉석제품류, 냉동식품류 등은 그 종류가 다양하지 못 하고 신제품의 출시 역시 활발하지 않아 소비자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뉴질랜드의 소비자는 대체로 수입 식품에 대한 저항감이 높지 않고 생소한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라. 현지 시장진출 유망품목

- 여성의 취업과 사회 참여가 활발하고 간편한 식사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전자 레인지를 이용하여 간단히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즉석식품류 (냉동제품, 용기면, 레토르트 제품 등)의 전망이 좋음. 다만 현지인의 기호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 제품 개발에 반영이 되어야 함
- 세계적으로 제품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는 스낵, 파이, 껌 등의 제품을 접해본 현지인들의 반응 역시 상당히 좋음
- Sushi의 판매가 오랜 기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요오드가 부족한 뉴질랜드 토질 때문에 김 등의 해조류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임

7. 한국식품 수출확대 및 진출방안

- 가. SWOT 분석 113
- 나. 시장진출 애로사항 및 문제점 114
- 다. 시장 진입을 위한 제안 114

7_ 한국식품 수출확대 및 진출방안

가. SWOT 분석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껌, 과자, 스낵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많음 ● 한국 식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품질이 우수함 ● 비교적 농산물의 수급이 안정되어 있고 농산물의 안전성 기준이나 친환경 재배 기술의 수준이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 5주 정도의 운송시간(해상)이 필요, 비싼 항공 운임 등 운송 부담 ●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음 ● 뉴질랜드 시장에 대한 조사,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음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농산물의 경우 한국과 기후가 반대여서 같은 농산물이라도 수확 시기가 다름 ● 호주 시장과 연계할 경우 시장 접근이 쉬움 ● 뉴질랜드의 식품 유통 구조가 비교적 단순함 ● 뉴질랜드 내 아시안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음 ● 다문화 사회가 점차 진행되면서 이국적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대체로 많지 않아 시장 접근이 용이함 ● 최근 아시안 푸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상승 ● 관세 장벽이 높지 않고 일반 식품에 대한 수입 허가가 어렵지 않음 ● 최근 뉴질랜드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식품과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음 ● 가장 큰 경쟁상대로서 호주를 생각할 수 있는데 낮은 운송비와 호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the Closer Economic Relations Agreement가 맺어져 있어 경쟁에서 불리함 ● 뉴질랜드의 라벨링 규정이 한국과 다소 차이가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 신선농산물과 육류에 대한 수입과 통관이 상당히 어려움

나. 시장진출 애로사항 및 문제점

- 뉴질랜드를 단독 시장으로 보기 보다는 호주 시장과 연계하여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에서 특화된 마케팅이 거의 전무하며 한국 식품에 대한 소개나 홍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초기 시장 진출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신선 농산물의 수입과 관련해서 반드시 IHS 검역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국립 식품검역원이 2007년 말 포도, 참외, 인삼, 파프리카 등 4개 품목에 대해 동 기준 마련을 신청하였고 2008년에는 새송이버섯에 대한 기준마련을 추가 신청한 상태이나 처리가 늦어지고 있음

다. 시장 진입을 위한 제안

■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 한-뉴 FTA관련 2007년부터 협의 시작, 양국간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전기, 전자, 철강 등 공산품 수출이, 뉴질랜드는 농산품과 서비스부문 수출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의 농수산물 시장 잠식이 우려됨. 한국 정부는, 뉴질랜드산 농산품에 대한 관세 혜택이 큰 데 반해, 한국산 공산품에 대한 혜택은 미미하기 때문에 FTA 혜택이 뉴질랜드측에 크게 기운다고 판단하고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한국산 공산품에 대한 뉴질랜드의 관세율은 평균 3% 수준이지만 뉴질랜드산 농산품(낙농제품 포함)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은 20 ~ 40%임

■ 마케팅 전략

- 뉴질랜드 시장이 협소하여 독자적인 마케팅을 하기엔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웃한 호주의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호주와 뉴질랜드를 아울러 대양주 시장을 목표로 시장 진출을 하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함.
- 또한 호주의 수입상이 뉴질랜드 시장을 함께 관리, 유통하는 경우가 많아 뉴질랜드

시장에 접근이 쉬울 수 있음. 또 식품에 대한 규정이나 관련 법규도 호주와 공동으로 입법되어있는 것이 많고 호주에서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 뉴질랜드에서 같은 인증을 또다른 검토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가 비교적 근거리에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 유통 경로나 식품의 소비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뉴질랜드 시장에 진출 경험이 있는 호주 수입상을 물색하여야 함. 실제로 뉴질랜드의 유통업체들은 호주 시장에 유통 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시장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호주 업체가 뉴질랜드 유통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반감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다국적 기업에 호주를 생산 기지로 하고 뉴질랜드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 뉴질랜드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용이하고 단순한 방법은 특정 제품군에 전문화된 수입상이나 유통업체, 에이전트를 통하는 방법이며 이들은 관련 법규나 통관 절차, 물류 및 관련 네트워크에 이미 충분한 경험으로 익숙하기 때문임
- 개별 제품에 대한 시장 진출을 타진하는 것보다 한국 식품에 대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여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음.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적어 광고, 홍보 전략 또한 체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와 함께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할 경우 시장 확대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시장진출 및 수출확대 방안 등

- 뉴질랜드의 주요 전시회(Food Show, Fine Food New Zealand 등) 참가를 통해 뉴질랜드 일반 소비자에 한국의 우수 농산물과 식품을 전시, 홍보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향후 시장 진출을 위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상들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대부분의 경우가 국제 전시회 등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뉴질랜드의 수입상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전시회로는 FMI (시카고), ANUGA (독일), Fine Food Show (호주), SIAL (프랑스) 등이 있음

- 대부분의 농수산물이 품목별 도매시장이나 대형 유통체인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국적 유통망을 가진 유통회사와 제휴하여 주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구매 결정권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의 매니저 또는 도매 식품 바이어 등을 초청하는 한국 농산물 또는 식품 체험 관광을 기획하여 추진함으로써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이용
- 제품 광고와 홍보 방안 중의 하나로서 뉴질랜드 소비재 식품을 소개하는 잡지를 검토할 수 있음. 뉴질랜드에서 주요 소비 제품을 소개, 광고하는 잡지로는 FMCG나 Grocers' Review 등이 있으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홍보한다기 보다는 유통, 판매에 결정권을 가진 층을 상대로 제품의 홍보를 시작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음
- 뉴질랜드 현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여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 일례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여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진행중인 해외농업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화성군의 경우 한국에서 인기있는 생식용 포도 품종(캠벨)을 뉴질랜드에서 생산하여 겨울철에 한국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지에서 농장 매입 및 투자자를 모집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계절성 작물의 한국 비수기 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한국의 농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생산하여 국내뿐 아니라 제3국 수출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으며 장차 한-뉴 FTA가 발효되면 막강한 상승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됨
- 한상 네트워크 또는 해외 한인무역인연합회(OKTA) 등 현지에 뿌리내리고 있는 현지 교민 네트워크와 협력 방안 추진

■ 향후 시장전망

- 한국 식품을 포함한 아시안 식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질 것임
- 자연, 건강 등의 세계적인 식품 트렌드에 따라 유기농 제품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8. 기 타

가. 주요기관 연락처	119
나. 잠재적 구매자 목록	121
다. 식품관련 전시회	122

8_ 기 타

가. 주요기관 연락처

● Agricultural Affairs Office

-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American Embassy
- Add: 29 Fitzherbert Terrace, Thorndon, Wellington, New Zealand
- Tel: +64-4-462-6012
- Fax: +64-4-462-6016
- Email: agwellington@usda.gov

●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

- Add: 108 The Terrace, Wellington 6036, New Zealand
- Tel: +64-4-978-5631
- Fax: +64-4-473-9855

● New Zealand Food Safety Authority (NZFSA)

- Add: 68-86 Jervois Quay, PO Box 2835, Wellington, New Zealand
- Tel: +64-4-463-2500

- Fax: +64-4-463-2501
- Email: Rebecca.mcgill@nzfsa.govt.nz
- Web: <http://www.nzfsa.govt.nz>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MAF)**

- Add: PO Box 2526, Wellington, New Zealand
- Tel: +64-4-474-4100
- Fax: +64-4-474-4111

● **MAF Biosecurity New Zealand**

- Add: Pastoral House, 25 The Terrace, Wellington, New Zealand
- Tel: +64-4-894-0100
- Fax: +64-4-894-0720
- Web: <http://www.biosecurity.govt.nz>

● **Restaurant Association of New Zealand**

- Add: 45 Normanby Road, Mt Eden, PO Box 8287, Symonds Street, Auckland, NZ
- Tel: +64-9-638-8403
- Fax: +64-9-638-4209
- Email: info@restaurantnz.co.nz
- Web: <http://www.restaurantnz.co.nz>

나. 잠재적 구매자 목록

● Foodstuffs (Wellington) Co-operative Society Limited

- Add: PO Box 38-896 Kiln Street, Silverstream Wellington, New Zealand
- Attn: Eve Kelly, Purchase Manager; Andrew Loveridge
- Tel: +64-4-527-2510; 04-527-2655
- Email: eve.kelly@foodstuffs-wgtn.co.nz

● Foodstuffs (South Island) Co-operative Society Limited

- Add: 167, Main North Road, Papanui Christchurch, New Zealand
- Attn: Graham May, Purchase Manager
- Tel: +64-3-353-8648
- Email: gmay@foodstuffs-si.co.nz

● Foodstuffs (Auckland) Co-operative Society Limited

- Add: PO Box CX12021, Auckland, New Zealand
- Attn: Mr. Tony Olson, Purchase Manager
- Tel: +64-4-621-0641

● Progressive Enterprises

- Add: Private Bag 93306, Otahuhu Auckland, New Zealand
- Attn: Graham Walker, Business Manager
- Tel: +64-9-275-2621

다. 식품관련 전시회

● The Food Show

- Add: PO Box 47213, Ponsonby Auckland, NZ
- Tel: +64-9-376-4603
- Fax: +64-9-378-7659
- Web: <http://www.foodshow.co.nz>

● Fine Food Show

- Add: PO Box 47213, Ponsonby Auckland, NZ
- Tel: +64-9-376-4603
- Fax: +64-9-378-7659
- Email: gail@finefoodsNZ.co.nz

● Hospitality NZ Show and Wine New Zealand

- Add: The XPO Group Ltd., PO Box 9682, New Market Auckland, New Zealand
- Tel: +64-9-976-8300
- Fax: +64-9-379-3358
- Email: info@dmgworldmedia.co.nz
- Web: <http://www.hospitalitynz.co.nz>

● Katrina Gordon Show

- Add: PO Box 8647 Christchurch, New Zealand
- Ph: 64-3-348-2042
- Fax: 64-3-348-0950

틈새시장 개척을 위한 이머징마켓 진출여건

|| 뉴질랜드편 ||

발행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발행일 : 2010년 1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조사참여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NEW ZEALAND Agribusiness Report Q4 2010

뉴질랜드 해외모니터

KOTRA 국가별자료(뉴질랜드)

총괄 - 식품수출정보팀(박영미)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02) 6300-1102

본 자료는 KATI(www.kati.net) > 무역정보 > 발간책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 공사는 임직원에게 대한 부정비리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신자부담 「24시간 부정비리 신고 모바일 핫라인(080-112-2580)」을 개설 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